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가이드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가이드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본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가이드”는 중국 상표 침해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기업에게 실무적으로 참조할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상표 법률 체제나 조항은 매우 유사하지만, 실제 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서로 다른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1차 심사결과에서 한국과 같이 심사의견통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바로 등록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이 나오고, 또한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유사한 상황에서도 담당 상표 심사관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결과가 내려지며, 상표침해 대응에 있어서도 사법적 조치보다 행정적 조치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점 등 많은 면에서 서로 다르다.

한편, 한국은 중국에서 상표 침해 피해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무역국이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 중 화장품, 식품, 유아용품 등 모조품이 유통되기 쉬운 제품들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많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 및 평가가 높아지면서 한국 제품이 중국의 시장에서 다양하고 지역적으로도 넓게 분포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모조품 생산자들이 거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광범위하게 침해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더 불리한 상황은 중국에 이미 등록된 유효상표가 거의 3,000만 건에 육박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자사 상표를 중국에 출원한다 해도 유사한 상표의 존재로 인해 등록받기 어렵고, 또한 외국의 상표를 부당 선등록하는 상표 브로커들도 성행하고 있기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상표를 중국에서 제대로 보호받기 힘든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를 보호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예를 들어 초기에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고 상표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행정 절차 또는 사법 절차를 통하여 대응하며, 상표 이의, 무효, 불사용취소심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자사의 권익을 보호받으려고 노력해왔다. 한국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도 상표 등록 지원금과 침해 대응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 대응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 상표 침해 실태 조사와 보고서 같은 형식의 유용한 정보를 한국 기업에게 전달하여 한국 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실제 상황은 여전히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아직도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상표를 침해한 모조품이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며, 현실적으로 모든 침해자들에게 대응을 진행할 경우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특히, 한국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처럼 큰 비용을 들여서 상표대리사무소나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넓은 중국 땅에서 많은 침해자들을 모두 조사하고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상표 대리사무소는 상표 등록이나 무효 등에 관련한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법률사무소는 대부분 명확한 침해대상이 있는 경우의 침해 대응을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침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예산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시간상 단속이나 소송을 장기간 진행할 수 없는 등, 한국 기업의 다양한 현실적 상황을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한국 기업이 맞춤형 전략을 채택하고,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적 상황이다.

본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가이드”는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국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편성하였다. 편록과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모든 상황에 대응되는 상세한 내용은 담지 못했지만,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될수록 실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생각한다.

본 가이드는 “제1장 중국 상표 침해 단속에 관련한 법률 및 규정”, “제2장 각 단속 대응 방법 및 장단점 소개”, “제3장 각 단속 대응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제4장 단속 대응 사례”, “제5장 중국 상표 침해 단속에 대한 건의”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중국 상표 침해 단속에 관련한 법률 및 규정” 부분에서는 중국 상표 침해 단속에 관련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체제를 설명하고 중요한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제2장 각 단속 대응 방법 및 장단점 소개” 부분에서는 상기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할 수 있는 각 단속 대응 방법 및 그들의 장단점에 대하여 각기 설명하였다.

“제3장 각 단속 대응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부분에서는 각 단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서류, 양식 등을 정리하였다.

“제4장 단속 대응 사례” 부분에서는 당소 또는 당소의 상표실무자가 직접 경험했던 상표 침해 단속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5장 중국 상표 침해 단속에 대한 건의” 부분에서는 중국 상표 단속 대응에 관한 당소의 건의를 정리하였다.

본 가이드가 한국 기업의 중국 상표 실제 실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작성자: 북경청송특허법률사무소

정청송, 김철민, 최춘화(고문)

2020년 11월

CONTENTS

I.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관련 법률 및 규정	1
제1절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및 법규 체계	3
1.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및 법규 소개	3
2. 관련 법률 및 법규 등의 중요도 순위	4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정의 및 판단기준	6
1. 상표권 침해의 정의	6
2. 상표권 침해의 판단기준	7
3.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	11
제3절 상표권의 행정보호	20
1.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단속조치	20
2.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21
3.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	21
제4절 상표권의 민사보호	24
1. 상표권 침해의 민사책임 및 민사제재	24
2.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구제 방식	26
3. 상표권 침해 배상액의 산정	27
4. 제소 전 금지명령, 재산보전 및 증거보전	33
제5절 상표권의 형사보호	34
1. 상표권 침해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형벌	34
2. 형사범죄 판정기준	34
3. 상표권 침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형사 구제	36
4.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	36

제6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표권 보호	40
1.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의무와 책임	40
2.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호조치를 이용한 상표권 침해 단속	41
3.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	41
제7절 세관에서의 상표권 보호	48
1. 세관에서의 상표권 보호의 두 가지 방식	48
2.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	49
II. 각 단속 대응 방법 및 장단점 소개	57
제1절 민사 소송을 통한 대응	59
1. 민사 소송을 통한 대응의 장점	59
2. 민사 소송을 통한 대응의 단점	61
제2절 행정 루트를 통한 대응	62
1. 행정 루트를 통한 대응의 장점	62
2. 행정 루트를 통한 대응의 단점	63
3. 적용 상황	63
제3절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	64
1.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의 장점	64
2.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의 단점	65
3. 적용 상황	66
제4절 경고장 발송을 통한 대응	67
1. 경고장 발송을 통한 대응의 장점	67
2. 경고장 발송을 통한 대응의 단점	68
3. 적용 상황	68

제5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를 통한 대응	69
1.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를 통한 대응의 장점	69
2.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를 통한 대응의 단점	69
3. 적용 상황	70
제6절 세관을 통한 대응	71
1. 상표권을 세관에 등록한 상황에서의 대응	71
2. 상표권을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응	72
3. 세관을 통한 보호의 장점	73
4. 세관을 통한 보호의 단점	74
5. 적용 상황	74
III. 각 단속 대응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75
1.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77
1.1 제출자	77
1.2 주관 기관	77
1.3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77
2. 상표권 침해 행정 처리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78
2.1 제출자	78
2.2 주관 기관	78
2.3 상표권 침해 행정 처리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78
3. 상표권 침해 형사 고소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79
3.1 제출자	79
3.2 주관 기관	79
3.3 상표권 침해 행정 처리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80

4.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고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81
4.1 제출자	81
4.2 주관 단위	81
4.3 상표권 침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고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81
5. 세관 신고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82
5.1 상표권의 세관 등록에 필요한 수속	82
5.2 권리자에 의한 화물 압류 신청	84
5.3 세관의 직권에 근거한 조사 및 처리	85
IV. 단속 대응 사례	87
1. Y사 사례	89
2. P사 사례	90
3. G사 사례	91
4. R사 사례	93
V. 중국 상표 침해 단속에 대한 건의	95

I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관련 법률 및 규정

제1절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및 법규 체계_3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정의 및 판단기준_6

제3절 상표권의 행정보호_20

제4절 상표권의 민사보호_24

제5절 상표권의 형사보호_34

제6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표권 보호_40

제7절 세관에서의 상표권 보호_48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가이드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01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관련 법률 및 규정

제1절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및 법규 체계

1.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및 법규 소개

중국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및 법규는 주로 상표권의 민사 및 행정 보호에 관련한 법률 및 법규, 상표권의 형사 보호에 관련한 법률 및 법규, 상표권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호에 관련한 법률 및 법규, 상표권의 세관 보호에 관련한 법률 및 법규 등을 포함한다.

1.1 상표권의 민사 및 행정 보호

현행 「상표법」(2019년 개정판)은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법률적 근거이다.

「상표법」에는 상표권 침해행위 판정,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조치, 구제방식 및 상표권과 관련되는 민사, 행정, 형사 책임 등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법통칙」(2021.1.1 실효)과 「민법전」(2021.1.1 발효)은 거시적 측면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실시조례」는 상표법의 규정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보충설명 하였다.

국가지식산권국의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은 「상표법」과 「상표법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집행 절차단계에서 상표권 침해 기준에 대한 판정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상표민사분쟁사건 심리시의 법률적용에서 나타나는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는 민사분쟁소송사건의 심리에 대한 관련규정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1.2 상표권의 형사 보호

「형법」은 상표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대해 규정하였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사건 처리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등 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사건관련 심리규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1.3 상표권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심리에 관한 지도의견」과 「최고인민법원의 인터넷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에 관련한 여러(若干 약간의) 법률 적용문제에 관한 답변」에서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상세히 해석하였다.

1.4 상표권의 세관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하는 단속 조치를 규정하였다. 「세관지식재산권 보호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세관 보호조례에 관한 실시방법」에서 상기 조치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법규 등의 중요도 순위

중국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률, 법규체계는 중요도 순위로 법률, 행정 법규, 사법 해석 및 의견, 및 관련 기관의 규정 및 기타 규정 등을 포함한다.

2.1 법률

상표권에 관련한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민법통칙」(2021.1.1 실효) 「민법전」(2021.1.1 발효), 「형법」, 「전자상거래법」, 「세관법」 등을 포함한다.

이 외에 상표권 침해에 관련한 소송 등 절차에 관한 법률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한다.

2.2 행정 법규

상표권에 관련한 행정 법규에는 「상표법 실시조례」, 「세관지식재산권 보호조례」 등이 포함된다.

2.3 사법 해석 및 의견

상표권에 관련한 사법 해석 및 의견에는 최고인민법원의 「상표민사분쟁사건 심리시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三)」,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사건 처리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 최고인민법원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관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심리에 대한 지도의견」, 최고인민법원의 「인터넷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답변」 등이 포함된다.

2.4 관련 기관의 규정 및 기타 규정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지식재산권 보호조례」의 실시방법 등이 포함된다.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정의 및 판단기준

1. 상표권 침해의 정의

상표권 침해는 이미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침해와 등록되지 않은 저명 상표권에 대한 침해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1.1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침해

「상표법」 제57조에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등록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 (1) 상표 등록인의 허가없이 동일 상품에서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 (2) 상표 등록인의 허가없이 동일 상품에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품에서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
- (3)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 (4) 타인이 등록한 상표 표식을 위조 또는 무허가 제조하거나 또는 위조, 무허가 제조한 등록 상표 표식을 판매한 경우
- (5) 상표 권리자의 동의없이 등록 상표를 변경하고, 변경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
- (6)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편의 조건을 제공하고, 타인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경우
- (7) 타인의 등록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

1.2 등록되지 않은 저명 상표권에 대한 침해

「상표법」 제13조 제1 항의 규정에 근거하면,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저명 상표 또는 그 주요 구성부분을 무단으로 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 사용하여 쉽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 침해정지의 민사법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2. 상표권 침해의 판단기준

「상표법 실시조례」, 최고인민법원의 「상표민사분쟁사건 심리시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상표권리침해 판단기준」등 규정에 근거하면 「상표법」제57조에 규정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더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2.1 상표 등록인의 허가없이 동일 상품에서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본 항목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의 성립은 아래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1) 권리침해 혐의행위가 상표법 법적 의미 상의 상표 사용에 해당되는 것 (상표법 법적 의미 상의 상표 사용이라 함은 상표를 상품, 상품 포장, 용기, 서비스 장소 및 거래문서에 사용하거나 또는 상표를 광고,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게 하는 사용을 가리킨다)
- (2) 권리침해 관련 상표가 권리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인 것
- (3) 권리침해 관련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한 상품인 것

이 외에 본 조항은 이하 몇가지 특수상황을 포함하는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1) 등록 상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여러개의 등록 상표를 조합 사용하고,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2)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기업명칭 중의 상호를 돌출시켜 사용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게 되는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3)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네임을 통하여 관련 상품의 전자상거래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대중의 오인, 혼동을 쉽게 초래하는 경우는 상표법 제57조 제7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2 상표 등록인의 허가없이 동일 상품에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품에서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

본 항목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의 성립은 아래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1) 권리침해 혐의행위가 상표법 법적 의미 상의 상표 사용에 해당되는 것
- (2) 권리침해 관련 상표가 권리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것
- (3) 권리침해 관련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 것
- (4) 권리침해 상표의 사용이 관련 대중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

본 조항은 이하 몇가지 특수상황을 포함하는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1) 등록 상표를 임의로 변경 또는 여러 개의 등록 상표를 조합 사용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기업명칭 중의 상호를 돌출시켜 사용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되어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을 상품명칭 또는 상품표장으로 사용하여 관련 대중의 오인을 초래한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등록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4) 색채 미지정 등록 상표는 자유로 색상을 추가할 수 있으나, 다른 상표와 유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색상을 추가하여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여 쉽게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만약 등록 상표가 저명도가 현저하고 권리 침해자와 등록 상표 권리자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거나 비교적 큰 연관성을 가진 업종에 속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을 사용할 경우 권리침해 혐의인이 부당의도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2.3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아래 몇가지 특수상황을 포함하는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1) 재료의 공급과 시공을 모두 책임진 가공 경영 활동에서 경영자가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3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2)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증여하는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3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4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편의 조건을 제공하고, 타인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경우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편의 조건을 제공하고, 타인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경우는 아래 몇가지 상황을 포함하는데 이에 한하지 않는다.

- (1)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위해 창고 보관, 운송, 우편발송, 인쇄제작, 은폐, 경영장소, 인터넷 상품거래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2) 시장관리자, 전시회 주최자, 판매장소 임대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운영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시장 내 경영자, 전시회 참가자, 판매장소 임대인, 판매장소 임차인, 플랫폼 내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 또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침해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비록 모르지만 상표 법률 집행 관련 부서의 통지를 받거나 또는 상표권자가 효력을 발생한 행정·사법 문서를 전달하였는데 여전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5 타인의 등록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

타인의 등록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는 아래 몇가지 상황을 포함하는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1)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상호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돌출 사용함으로써 관련 대중의 오인을 쉽게 초래하는 경우

- (2) 타인의 저명 상표 또는 그 주요 구성부분을 무단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로 사용하여 대중의 오인을 일으켜 해당 저명 상표 권리자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네임을 통하여 관련 상품의 전자상거래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대중의 오인,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경우

특히 「상표권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표법 제57조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제1항 (一), (二)에 해당하는 권리침해의 판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상표로서의 사용, 유사 상표에 대한 판단, 유사상품에 대한 판단,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의 판단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

제48조 본 법에서 언급한 상표사용은 상표가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와 상품 거래서류에 사용되거나 상표가 광고홍보, 전람, 기타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상표 출처를 식별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제64조 등록 상표 권리자가 청구한 배상에 대해 권리침해 혐의인이 해당 등록 상표의 3년 이내 불사용을 기초로 항변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 상표 권리자에게 최근 3년 이내 등록 상표의 실제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 상표 권리자가 최근 3년 이내의 등록 상표 실제 사용에 대해 증명할 수 없고 권리침해 행위로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권리침해 혐의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록 상표권에 대한 침해상품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고,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상품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

3.1 「상표법」 관련 내용

「상표법」 제57조

다음 행위 중 하나는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해당한다.

- (1) 상표 등록인의 허가 없이 동일 품종의 상품에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경우
- (2) 상표 등록인의 허가 없이 동일 품종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쉽게 혼동을 일으킨 경우
- (3)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 (4) 타인이 등록한 상표 표식을 위조, 무허가 제조하거나 위조, 무허가 제조한 등록상표 표식을 판매한 경우
- (5) 상표 권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변경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
- (6) 고의로 타인의 상표 전용권 침해행위에 편의조건을 제공하고,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경우
-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

제48조 본 법에서 언급한 상표사용은 상표가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나 상품 거래서류에 사용되거나 상표가 광고홍보, 전람, 기타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상표 출처를 식별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제64조 등록상표 권리인이 청구한 배상에 대해 권리침해 혐의인이 해당 등록상표의 3년 이내 불사용을 기초로 항변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상표 권리인에게 최근 3년 이내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상표 권리인이 최근 3년 이내의 등록상표 실제사용에 대해 증명할 수 없고 권리 침해행위로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권리침해 혐의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록상표 전용권에 대한 침해상품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고,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2 「상표법 실시조례」 관련 내용

제75조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위해 창고 보관저장, 운송, 우편발송, 인쇄제작, 은닉은폐, 경영장소, 인터넷상품거래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57조 제6항에 규정된 편리조건 제공에 속한다.

제76조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을 상품명칭 또는 상품표장으로 사용하여 관련 대중의 오인을 초래한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등록상표 전용권리 침해행위에 속한다.

3.3 최고인민법원의 「상표민사분쟁사건 심리시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의 관련 내용

제1조 아래 경우는 상표법 제52조 제 (5) 항에 규정된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리에 기타 손해를 초래 조성한 행위에 속한다.

-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상호로서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에 돌출 사용함으로써, 관련 대중의 오인을 쉽게 초래하는 경우.
- (2) 타인이 등록한 유명상표 또는 그 주요 구성부분을 무단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대중의 오인을 일으켜 해당 유명상표 권리인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초래하였을 경우,
-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을 통하여 관련 상품 전자상거래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대중의 오인, 혼동을 쉽게 초래한 경우.

상표 소유인은 능동적으로 우리 나라의 법률규정에 따라 자체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관련 등록증명 서류를 우리 나라 상표관리국에 제출하여 진행, 처리해야 하며, 상술한

위법자들이 사용,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자신의 상표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2조 상표법 제13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중국 미등록 유명상표 또는 그 주요 구성부분을 무단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 혹은 유사상품에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쉽게 오인, 혼동을 초래한 경우에는 응당 침해정지 및 민사상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4 국가지식산권국의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의 관련 내용

(1) 상표로서의 사용에 관련한 내용 (상표성 사용)

제3조 상표 권리침해의 구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권리 침해혐의 행위가 상표법의 의미에서 상표 사용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법의 의미에서 상표의 사용이라는 것은 상표를 상품, 상품 포장, 용기, 서비스 장소 및 거래문서에 사용하거나 혹은 상표를 광고,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상표의 상품, 상품포장, 용기 및 상품 거래문서에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1) 직접 부착하거나 각인, 낙인 또는 편직 등의 방식으로 상표를 상품, 상품 포장, 용기, 라벨 등에 부착하거나 상품부가 표지판, 제품 설명서, 안내 책자, 가격표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상품판매 계약서, 영수증, 인보이스, 증빙, 상품 수출입 검사검역 증명서, 통관 신고서 등 상품 판매와 관련되는 거래문서에 사용 등을 포함한 경우.

제5조 상표의 서비스 장소 및 서비스 거래문서에 사용되는 경우;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1) 안내 책자, 작업자의 복장, 포스터, 메뉴, 가격표, 명함, 경품권, 사무용 문구, 편지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시 사용하는 관련 물품 등 서비스 장소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인보이스, 영수증, 송금증빙, 서비스 협의, 유지보수 증명서 등 서비스 관련 서류와 자료에 사용되는 경우

제6조 상표의 광고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 (1) 방송,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 미디어에 사용 혹은 공개 발행하는 출판물에 사용되거나 광고판, 우편광고 또는 기타 광고매체에 사용되는 경우,
- (2) 전시회,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상표사용 인쇄물, 전시대 사진, 전시증명과 기타 자료를 포함하여 전시회나 박람회에 사용되는 경우;
- (3) 인터넷 사이트, 실시간 통신도구,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등 캐리어에 사용되는 경우,
- (4) QR 코드 등 정보 캐리어에 사용되는 경우,
- (5) 점포의 간판, 가게의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경우.

제7조 상표의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주관적 의도, 사용방식, 홍보방식, 업종관행, 소비자의 인지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범위를 초과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기한, 수량 등은 상표 권리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포함된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내용

제9조 동일상품이란 권리침해 혐의인이 실제로 생산, 판매하는 상품 명칭과 타인의 등록상표 사용이 허가된 상품 명칭이 동일한 상품, 또는 상품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 용도, 주요 원료, 생산부문, 소비대상, 판매경로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황, 또는 관련 대중이 일반적으로 동일상품으로 인지하는 상품을 말한다.

동일한 서비스란 권리침해 혐의인이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 명칭과 타인의 등록상표 사용이 허가된 서비스와 동일한 명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명칭은 다르지만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장소, 제공자, 대상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황, 또는 관련 대중이 보편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로 인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허가사용 상품 또는 서비스 명칭이란 국가지식산권국 상표의 등록업무 진행시에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명칭을 말하며, <유사상품과 서비스구분표>(이하 구분표)에서 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 명칭과, 제시하지 않았지만 상표 등록 중에 접수된 상품 또는 서비스 명칭을 말한다.

제10조 유사상품이란 기능, 용도, 주요원료, 생산부문, 소비대상, 판매경로 등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는 상품을 말한다.

3.4 유사 서비스란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제공자, 대상, 장소 등이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11조 동일한 상품 또는 동일한 서비스, 유사상품 또는 유사 서비스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응당 권리인의 등록상표 허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간의 비교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12조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타인의 등록상표 허가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상품 또는 동일 서비스, 유사상품 또는 유사 서비스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행 구분표를 참조하여 인정한다.

구분표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응당 관련 대중의 보편적인 인식을 토대로 상품의 기능, 용도, 주원료, 생산부문, 소비대상, 판매경로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혹은 유사상품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구분표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당 관련대중의 보편적인 인식을 토대로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제공자, 대상, 장소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한 내용

제13조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란 권리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같거나, 조금은 다르나 시각적 효과나 음성상표의 청각적 감지 등의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고 관련 대중이 구분하기 어려운 상표를 말한다.

제14조 권리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표와 타인의 등록상표 비교시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문자상표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다.

1. 문자구성, 배열순서가 똑같은 경우.
2. 등록상표의 글꼴, 알파벳 대소문자의 가로 세로 배열 등이 등록상표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3. 등록상표의 글꼴, 자모, 숫자 사이의 간격 등이 등록상표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4. 등록상표의 색상을 변경하고, 등록상표의 현저한 특징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5. 등록상표에 상품의 통용명칭, 이미지, 모델 등의 현저한 특징이 결핍한 내용만 추가했을 뿐, 등록상표의 현저한 특징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2) 이미지 상표의 구성요소, 표현형식 등이 시각 상 대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3) 문자와 이미지 조합상표의 문자구성, 이미지 외관과 그 배열 조합방식이 똑같고, 상표의 전체적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 (4) 입체상표 중의 3D표식, 평면요소가 같거나 대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 (5) 색채 조합상표에서 색채의 조합, 배열방식이 같거나 대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 (6) 음성상표의 청각감지 상 전체 음악 이미지와 같거나 대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 (7) 기타 등록상표와 시각적 효과나 청각적 감지 상 대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제15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란 권리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비교했을 때, 문자상표의 경우 글꼴, 발음, 의미가 비슷하거나; 이미지 상표의 경우 이미지 구성, 착색, 외형이 비슷하거나; 문자와 이미지 조합상표의 전체 배열 조합방식과 외형이 비슷하거나; 입체상표의 3D 입체형상의 모양과 외형이 비슷하거나; 색채 조합상표의 색상, 조합이 비슷하거나; 소리상표의 청각감지 상 또는 전체적인 음악 이미지가 비슷한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권리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에 해당되는 지는 현행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의 상표유사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제17조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는 권리인의 등록상표와 권리침해 혐의 상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인지를 판단할 때는 관련 대중의 보편적인 주의력과 인지력을 기준으로 격리관찰, 전체 비교와 주요부분 비교 방법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제19조 상표권 침해판단에서 같은 상품이나 같은 서비스에 유사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유사한 서비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쉽게 혼동, 오인을 초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제20조 상표법에 규정된 쉽게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아래에 해당된다.

- (1) 관련 대중이 권리침해 상품이나 서비스가 등록상표 권리인으로부터 생산, 제공되는 것이라고 여기게 하는 경우.
- (2)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권리침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등록상표 권리인 사이에 투자, 허가, 가맹 또는 제휴(합작) 등의 관계가 있다고 여기게 하는 경우.

제21조 상표법 집행 관련 부문에서 쉽게 혼동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각 요소 간의 상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1) 상표의 유사한 정도;
-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한 정도;
- (3) 등록상표의 현저한 식별성과 지명도;
- (4)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및 상표 사용방식;
- (5) 관련 대중의 주의와 인지도;
- (6) 기타 관련요소.

제22조 등록상표의 임의 변경 또는 여러 개의 등록상표를 조합 사용하여 타인의 동일 상품 혹은 서비스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경우는 상표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임의로 등록상표를 변경하거나 여러 개의 등록상표를 조합 사용하여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서비스 상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쉽게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상표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제23조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 기업명칭 중의 상호를 돌출하여 사용할 때,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기업명칭 중의 상호를 돌출 사용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 또는 쉽게 혼동을 초래할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제24조 색채 미지정 등록상표는 자유로 색상을 도색할 수 있으나, 벌붙는 것을 목적으로 색상을 부착하여 타인의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 서비스 상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쉽게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등록상표의 지명도가 비교적 높고, 권리 침해인과 등록상표 권리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거나 비교적 큰 연관성을 지닌 업계에 속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사용할 경우 권리 침해인이 부당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25조 공사 도급재료의 가공, 도급 경영활동에서 도급업자가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상품을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3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제26조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증정하는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3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권리침해 혐의인이 허위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여 공급자를 찾지 못할 경우 '설명제공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30조 시장 관리측, 전시회 주최측, 카운터 임대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경영자는 관리직책 이행을 소홀히 하고, 시장내 경영자, 전시회 참가자, 카운터 임차인, 플랫폼 내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를 실시함을 알거나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모르거나 상표법 집행관련 부문의 통지 또는 상표 권리인이 효력을 발생한 행정 · 사법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상표법 제57조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제31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을 통하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하여 관련 대중의 오인을 쉽게 초래하는 경우는 상표법 제57조 제7항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제3절 상표권의 행정보호

「상표법」, 「상표법 실시조례」,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절차 임시규정」에 근거하면 상표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하여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직권에 따라 조사, 처리할 수 있다. 공상행정부서가 권리침해를 인정할 경우 권리침해 상품과 도구를 압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권리자는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조사, 처리를 청구하거나 또는 배상액에 대해 협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단속조치

1.1 법에 따른 조사 및 처리

등록된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해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법에 근거하여 조사할 권리가 있고, 구체적으로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관련 당사자에게 질문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권 침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2) 당사자의 상표권 침해관련 계약서, 영수증, 회계 장부,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 (3)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 상표권 침해활동에 종사한 장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 권리침해 활동 관련 물품을 검사할 수 있고,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증거 및 증명이 되는 물품을 차압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1.2 행정처벌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1)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함.
- (2)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의 제조 및 등록 상표의 표식 위조에 사용되는 도구를 몰수, 폐기함.
- (3) 불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명하고, 불법 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명할 수 있음.

- (4) 5년 이내에 2회 이상 상표권 침해행위를 실시했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었을 경우 가중 처벌함.
- (5) 단,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고 판매했고,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또한 상품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판매금지를 명한다.

1.3 행정조정(行政调解)

상표권 침해의 배상액 분쟁에 대해 당사자는 해당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이상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정책에 근거하여, 권리자는 공상행정 관리부서(시장 감독관리 부서)에 조사, 처리를 요청할 수 있거나 또는 배상액에 대한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

3.1 「상표법」 관련 내용

제60조 본 법 제57조에서 열거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행위 중 1개 항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분쟁을 일으킨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안되는 경우, 상표 등록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공상행정 관리부문에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 관리부문이 처리할 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명하고, 침해상품, 침해상품 제조와 등록, 및 상표표식 위조에 주로 사용된 도구를 몰수, 폐기하고 불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불법 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상표 전용권 침해행위를 실시하거나 기타 정황이 엄중한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고,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문에서 판매금지를 명한다.

상표 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분쟁에 대해 당사자는 처리, 진행하고 있는 공상행정 관리부문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 관리부문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조정(调解书) 협의 발효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61조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해 공상행정 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진상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62조 현급(县级) 이상의 공상행정 관리부문은 이미 취득한 위법혐의 증거나 제보에 근거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때,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2) 당사자의 상표 전용권 침해 관련 계약서, 영수증, 회계장부,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 (3)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활동에 종사한 장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 권리침해 활동 관련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증거 및 증명이 되는 물품에 대해 압류하거나 차압할 수 있다.

공상행정 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앞 조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고,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상표 전용권 침해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상표 전용권이 분쟁이 있고, 동시에 권리인이 인민법원에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문은 사건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소거 (消除) 된 후,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를 회복하거나 종결한다..

3.2 「상표법 실시조례」 관련 내용

제71조 상표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문은 기한 내 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며, 거부시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7조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누구든지 공상행정 관리부문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제4절 상표권의 민사보호

권리자는 「상표법」, 「민법통칙」, 「민법전」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민사방식의 구제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고 권리 침해자에게 침해중지, 위험해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표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제소 전 금지 명령, 재산보전, 증거보전, 배상액 산정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1. 상표권 침해의 민사책임 및 민사제재

현행 「상표법」, 「민법통칙」, 「최고인민법원 상표민사분쟁사건 심리시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등의 법률, 법규 및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민사책임들은 주로 침해중지, 방해제거, 위험해소, 손해배상, 영향제거 등이 있다. 동시에 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이나 이후에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인민법원에서 등록 상표권 침해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아래와 같이 판결할 수 있다.

- (1) 권리 침해자가 침해정지, 방해제거, 위험제거, 손해배상, 영향제거 등의 민사책임을 부담
- (2) 벌금
- (3) 권리침해 상품, 위조상품 표식 및 권리침해 상품 제조에 사용된 재료, 도구, 설비 등의 재물 압수 여부에 관한 민사제재 결정

상기 제도에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2009년 개정) (2021.1.1 실효)의 관련 규정

제118조 공민, 법인의 저작권 (版权), 특허권, 상표권, 발견권, 발명권과 기타 과학기술 성과권이 표절, 변조, 위조 등의 침해를 받은 경우 침해중지, 영향제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34조 민사책임 부담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다.

- (1) 침해중지
- (2) 방해배제
- (3) 위험제거
- (4) 재산반환
- (5) 원상복구
- (6) 수리, 재 제조, 교체
- (7) 손해배상
- (8) 위약금 지불
- (9) 영향제거, 명예회복
- (10) 사과

이상의 민사상 책임부담 방식은 단독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통합 적용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이 같은 규정 외에도 훈계, 잘못 인정 서약 제출을 명하고, 불법활동을 진행한 재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법에 따라 벌금, 구류를 명할 수 있다.

(2) 「민법전」(2021.1.1 발효) 의 관련 규정

제179조 민사책임을 지는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다.

- (1) 침해중지
- (2) 방해배제
- (3) 위험제거
- (4) 재산반환
- (5) 원상복구
- (6) 수리, 재 제조, 교체
- (7) 계속이행
- (8) 손해배상

(9) 위약금 지불

(10) 영향제거, 명예회복

(11) 사과

법률적으로 징벌적 배상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이 조항에서 규정한 민사책임 부담방식은 단독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통합 적용될 수도 있다.

제1167조 권리침해 행위가 타인의 인신, 재산 안전을 위협할 경우 권리침해를 당한 자는 권리 침해자에게 침해중지, 방해제거, 위험제거 등 권리침해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85조 고의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엄중한 경우에 권리침해 당한 자는 권리 침해자에게 상응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상표 민사분쟁 사건 심리시 법률적용에서 나타나는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법원의 해석」 관련 규정

제21조 인민법원은 등록 상표권 침해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민법통칙 제134조, 상표법 제53조의 규정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권리 침해자에게 침해정지, 방해제거, 위험제거, 손해배상, 영향제거 등의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으며, 별금부과 및 권리침해 상품, 위조 상표 표식, 권리침해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재료, 도구, 설비 등의 재물 압수 여부에 대한 민사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별금 액수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등록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내린 경우, 인민법원은 더 이상 민사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2.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구제 방식

「상표법」 · 「민사소송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권리자는 민사방식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침해자에게 침해중지, 영향제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에 관련하여 「상표법」 제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0조 본 법 제57조에서 열거한 등록 상표권 침해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분쟁을 일으킨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안되는 경우 상표 등록인이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처리시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하고, 침해상품 및 침해상품 제조와 등록상표 표식 위조에 주로 사용된 도구를 몰수, 폐기하고, 불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명하고, 불법 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명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상표권 침해행위를 실시하거나 기타 상황이 심각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고,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또한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판매금지를 명한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분쟁에 대해 당사자는 처리, 진행하고 있는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조정협약(调解书)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상표권 침해 배상액의 산정

「상표법」의 원칙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 배상액은 일반적으로 권리자 손실의 보완 또는 권리 침해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하는 동시에 라이선스 비용, 선의 및 악의 여부 등 상황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법정 배상액 상한은 500만 위안이다. 또한 「상표법」은 악의적인 권리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

권리자의 상표 3년 불사용 상황, 판매자가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 손실을 배상하지 않는데 대한 합리적인 항변 등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3.1 침해 배상액 산정의 주요 근거

「상표법」 제63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 (1) 상표권 침해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 (2) 실제 손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 (3)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의 실시허가 사용료(라이선스 비용)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 (4)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상술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액수의 1배에서 5배 이하의 범위로 침해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 (5) 침해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사용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 권리 침해자가 권리 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 상표의 실시허가 사용료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 침해 행위의 상황에 근거해 5배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정하여 판결한다.

상기 규정에 근거한 권리침해 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주로 3가지가 포함된다. 우선 권리자의 실제 손실을 고려하고, 다음 권리 침해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고려하며,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은 상품의 권리침해로 인해 조성된 “감소된 판매 총개수* 매 제품의 합리적 이윤” 계산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권리자의 판매량 감소가 권리침해 행위로 초래된 필연적인 직접적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법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여 채용하는 다른 한가지 계산방식으로 “권리침해 제품 총개수*권리자 매 제품의 합리적 이윤” 산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권리 침해자의 권리침해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해 침해 배상액을 확정하기 비교적 어렵다. 민사사건에서는 절대 다수의 권리 침해자가 장부와

이윤 실적표, 판매수입, 계약서 등, 직접적인 증거의 제공을 거부하기 때문에 권리 침해자의 이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법원이 전체 사건 상황에 근거하여 배상 금액을 결정할 경우, 주로 고려하는 요소는 권리자 상표의 실시허가 사용료, 권리자의 상표 사용시간 및 지명도, 권리 침해자의 주관적인 착오의 정도, 권리 침해자의 권리침해 행위의 실시범위 및 지속시간 등이 있다.

3.2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에 관한 항변

「상표법」 제60조에 근거하면 권리 침해자가 아래의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 (1) 불사용 항변: 권리 침해자가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로 항변을 제기한 경우, 만약 상표권자가 최근 3년 이내에 등록 상표의 실제 사용에 대해 입증할 수 없고, 또한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권리 침해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합법취득 항변: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고 판매했고,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제공자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3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

(1) 「상표법」 관련 내용

제63조 상표권 침해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에 따라 결정한다. 실제 손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나 권리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의 실시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상황이 엄중한 경우 상술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액수의 1배에서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사용한 합리적 지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증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권리 침해자가 권리침해 행위와 관련된 회계장부, 자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권리

침해자에게 권리침해 행위 관련 회계장부,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권리침해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조작한 회계장부, 자료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결정하여 판정할 수 있다.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손실, 권리 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 상표의 실시허가 사용료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상황을 근거로 5백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결정하여 판결한다.

인민법원은 상표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위조상표 상품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소각을 명한다. 위조상표 상품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된 재료, 도구에 대해서 소각을 명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전술한 재료, 도구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위조상표 상품은 위조상표만 제거한 뒤에 상업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시장에 유통시켜도 안 된다.

제64조 등록 상표 권리자가 청구한 배상에 대해 권리침해 혐의인이 권리자의 등록 상표 불사용으로 항변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 상표 권리자에게 최근 3년 이내 등록 상표의 실제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 상표 권리자가 최근 3년 이내의 해당상표 실제 사용에 대해 증명할 수 없고,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권리침해 혐의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권리침해 혐의인은 등록 상표권에 대한 침해상품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국가지식산권국의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관련 내용

제26조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증정하는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3항에 규정된 상표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권리침해 혐의인이 허위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여 공급자를 찾지 못할 경우 “설명 제공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27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는 상표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고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상품 매입경로가 상업 관례에 부합되지 않고,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 (2) 장부, 판매기록 등 회계증빙 제공을 거부하거나 회계증빙을 허위 기재한 경우
- (3) 사건발생 후 물증을 이전, 소각하거나 또는 허위 증명, 허위 상황을 제공했을 경우
- (4) 처벌 후 다시 유사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 (5) 당사자가 분명히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경우

제28조 「상표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설명 제공자”는 권리 침해자가 자발적으로 공급업체의 명칭, 경영주소, 연락처 등의 정확한 정보나 단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29조 상표권 침해 혐의인이 「상표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판매자가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고 판매했을 경우 권리침해 상품에 대하여 판매중지를 명하고, 공급업체에 대하여 입건조사 처리하거나 사건의 단서를 관할권이 있는 상표법 집행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조사, 처리한다.

판매중지를 명한 권리침해 상품을 권리 침해자가 다시 판매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의 관련 내용

제78조 「상표법」 제60조에 규정된 불법 경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1) 권리침해 상품의 판매가격
- (2) 미판매 권리침해 상품의 정가
- (3) 이미 밝혀진 실제로 판매한 권리침해 상품의 평균가격
- (4) 권리침해 당한 상품의 시장 중간가격
- (5) 권리 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인하여 얻은 판매수익
- (6) 권리침해 상품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타 요소

제79조 이하 경우는 상표법 제60조에 규정된,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1) 공급업체의 합법적 기명 날인과 명세서 및 대금 영수증이 있고, 이미 조사를 통하여 실증되었거나 또는 공급 업체의 인정을 받은 경우
- (2) 공급과 판매 쌍방이 체결한 구매 계약서가 있으며, 실제로 이행된 사실이 증명된 경우
- (3) 합법적인 구매 영수증이 있고, 또 영수증에 기재된 사항이 사건 관련 상품과 대응되는 경우
- (4) 사건과 관련된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경우

제80조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고 판매하고, 해당 상품의 합법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판매중지를 명하고, 사건을 권리침해 상품 제공자 소재지의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4)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분쟁 사건 심리시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若干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의 관련 내용

제14조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권리침해 상품의 판매총량*한개 상품의 이윤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이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상표 관련 상품의 개당 이윤에 따라 산정한다.

제15조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은 권리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초래된 상품의 판매감소량 또는 권리침해 상품판매량*해당 등록 상표 관련 상품의 개당 이윤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제16조 권리 침해자의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모두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따라 상표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 액수를 확정한다. 인민법원이 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권리침해 행위의 성질, 기간, 결과, 상표 저명도, 상표의 실시허가 사용료, 상표의 실시허가 사용시간, 범위, 종류 및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사용된 합리적 지출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다.

당사자 양측이 본 조항 첫번째 단락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한다.

4. 제소 전 금지명령, 재산보전 및 증거보전

상표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권 침해가 긴박한 특수상황에 대해 제소 전 금지명령, 재산보전, 증거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제소 전 금지 명령, 재산보전: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했거나 곧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제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합법적 권리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권리자는 법에 따라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해당 행위 중지를 명하고, 재산보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소 전 증거보전: 증거소멸 가능성이 있거나 나중에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자는 법에 따라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상표법」의 아래 조항에서 상세히 규정하였다.

제65조 상표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타인이 등록 상표권 침해행위를 실시 중이거나 곧 침해행위를 실시할 예정인 것을 증명하고, 즉시 제지하지 않을 경우, 그 합법적 권리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권리자는 법에 따라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해당 행위 중지를 명하고, 재산보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 권리침해 행위의 제지를 위해 증거소멸 가능성이 있거나 나중에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법에 따라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상표권의 형사보호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및 「형법」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등록 상표를 위조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가장 엄한 단속 조치이다. 국가 행정 및 사법기관은 모두 직권에 의하여 형사범죄를 단속할 수 있다. 권리자는 신고, 형사 고소 등을 통해 권리 침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1. 상표권 침해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형벌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가 형사범죄에 해당하고, 대응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 (1) 등록 상표 권리자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부과한다.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 (2) 위조 등록상표 상품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 판매한 경우, 만약 판매 금액이 비교적 크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부과하며, 그 판매 액수가 막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 (3) 타인의 등록상표 표식을 위조, 무단 제조하였거나 위조, 무단 제조한 등록상표 표식을 판매한 경우, 그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부과한다. 그 상황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2. 형사범죄 판정기준

「상표법」 제67조, 「형법」 제213조~제215조 및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사건 구체적 응용법률에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발부한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서 나타나는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등이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 위조행위는 모두 범죄구성 가능성을 가지며,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2.1 등록 상표 권리자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여기서, 동일 상품이란 권리침해 혐의인이 실제로 생산, 판매한 상품의 명칭이 타인의 등록 상표의 상품 명칭과 동일하거나 또는 상품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 용도, 주요 원료, 생산부서, 소비대상, 판매경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 대중이 일반적으로 동일상품으로 인지하는 상품을 말한다.

또한, 동일한 상표란 아래와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 (1) 등록 상표의 글꼴, 알파벳 대소문자의 가로, 세로 배열 등이 등록 상표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 (2) 등록 상표의 글꼴, 자모, 숫자 사이의 간격 등이 등록 상표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 (3) 등록 상표의 색상을 변경하고, 등록 상표의 현저한 특징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4) 등록 상표에 상품의 통용 명칭, 이미지, 모델 등의 현저한 특징이 결핍한 내용만 추가했을 뿐, 등록 상표의 현저한 특징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5) 입체상표 중의 3D 표식, 평면요소가 대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 (6) 기타 등록 상표와 기본상 차이가 없어 공중이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엄중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란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 (1) 불법 경영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금액이 3만 위안 이상인 경우
- (2) 2개 이상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고, 불법 경영액이 3만 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액이 2만 위안 이상인 경우
- (3) 기타 상황이 엄중한 경우

2.2 위조상표 상품인 것을 알면서 판매하고, 판매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위조상표 상품인 것을 알면서 판매하고, 판매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란 판매 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비교적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2.3 타인의 등록상표 표식을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이를 판매하고, 상황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 표식을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이를 판매하고, 상황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란 하기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 (1) 위조, 무단제조 또는 판매된 등록상표 표식의 수량이 2만건 이상이거나 불법 경영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액이 3만 위안 이상인 경우
- (2) 2개 이상의 등록 상표를 위조, 무단제조 또는 판매하였고, 그 상표 표식 수량이 1만건 이상이거나 불법 경영금액이 3만 위안 이상이거나 또는 불법 소득액이 2만 위안 이상인 경우
- (3) 기타 엄중한 상황인 경우

3. 상표권 침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형사 구제

상표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 공안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서 사건 조사시 전송(转送)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형사 자기 제소 등의 방식을 통해 형사 구제를 행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권리자가 공안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4.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

4.1 「상표법」 관련 내용

제67조 상표 권리자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권리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표식을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등록상표 표식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피침해인의 손실을 배상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등록 상표를 도용한 상품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피침해인의 손실을 배상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2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관련 내용

제213조 등록 상표 권리자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그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염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 또는 벌금만 부과한다. 특별히 염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214조 위조 등록상표 상품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 판매하였고, 판매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부과한다. 그 판매 액수가 막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215조 타인의 등록상표 표식을 위조, 무단 제조하였거나 위조, 무단 제조한 등록상표 표식을 판매하였고, 그 상황이 염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부과한다. 그 상황이 특히 염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4.3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사건 구체적 응용법률에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三)」 관련 내용

제1조 아래 경우 중 하나는 형법 제213조에 규정된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된다.

- 등록 상표의 글꼴, 알파벳 대소문자의 가로, 세로 배열 등이 등록 상표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 등록 상표의 글꼴, 자모, 숫자 사이의 간격 등이 등록 상표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 등록 상표의 색상을 변경하고, 등록 상표의 현저한 특징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4. 등록 상표에 상품의 통용 명칭, 이미지, 모델 등의 현저한 특징이 결핍한 내용만 추가했을 뿐, 등록 상표의 현저한 특징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5. 입체상표 중의 3D 표식, 평면요소가 같거나 대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6. 기타 등록 상표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

제10조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해서 범죄 위법소득, 불법 경영소득, 권리자에게 입힌 손실, 권리침해 위조물품 수량과 사회 위해성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액수는 일반적으로 위법 소득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 범위에서 정한다. 불법 소득액 확정이 어려울 경우 벌금 액수는 일반적으로 불법 경영액의 50% 이상 1배 이하로 확정한다. 불법 소득액수와 불법 경영액수가 모두 확정이 어려운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류, 관제 또는 벌금만 부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3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액수로 벌금을 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경우 일반적으로 15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벌금 액수를 정한다.

4.4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사건 처리의 법률적용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 관련 내용

五、형법 제213조에 규정된 「동일 상품」의 인정문제에 관하여

동일한 명칭의 상품이거나 또는 명칭이 다르지만 동일한 상품을 가리키는 경우 「동일한 상품」으로 인정된다.

「명칭」이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 상표등록 업무에서 상품에 사용하는 이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표 등록용 상품과 서비스 국제분류」에서 규정한 상품 명칭을 가리킨다. 「명칭이 다르지만 동일한 상품을 가리키는 경우」란 기능, 용도, 주요 원료, 소비대상, 판매경로 등이 같거나 기본적으로 같으며, 관련 대중이 일반적으로 같은 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상품은 권리자의 등록된 상표의 상품과 침해인이 실제로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비교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4.5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사건 구체적 응용법률에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관련 내용

제1조 등록 상표 권리자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아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형법 제213조에 규정한 엄중한 경우에 속하며, 위조 등록상표 침해죄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부과한다.

- (1) 불법 경영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금액이 3만 위안 이상인 경우
- (2) 2개 이상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고, 불법 경영액이 3만 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액이 2만 위안 이상인 경우
- (3) 기타 상황이 엄중한 경우

제2조 위조상표 상품인 것을 알면서 판매하고, 판매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비교적 큰 금액에 해당되며, 위조상표 상품 판매죄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부과한다.

제3조 타인의 등록상표 표식을 무단 위조, 제조하거나 판매하고, 아래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에 속하는 경우 형법 제215조에 규정된 엄중한 경우에 해당되며, 등록상표 표식 불법제조, 판매죄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부과한다.

- (1) 위조, 무단 제조 또는 판매된 등록상표 표식의 수량이 2만건 이상이거나 불법 경영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이거나 또는 불법 소득액이 3만 위안 이상인 경우
- (2) 2개 이상의 상표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또는 판매한 등록상표 표식 수량이 1만건 이상이거나 불법 경영금액이 3만 위안 이상이거나 또는 불법 소득액이 2만 위안 이상인 경우
- (3) 기타 상황이 엄중한 경우

제6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표권 보호

1.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의무와 책임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신고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신고를 받았을 경우 대응할 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손해의 확대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전문적인 신고처리 체계의 구축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전문적인 신고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자를 배치해 지식재산권 관련 신고처리를 처리해야 하며, 편리한 신고처리 루트를 제공하고, 신고처리 관련부서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발견했을 경우 플랫폼에 적시에 연락, 신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통지 및 전송 의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신고를 받으면 전담자를 배치해 지식재산권 관련 신고처리를 책임지고, 권리자가 제출한 예비증거 심사 후 플랫폼 내의 영업자에게 통지하며, 영업자가 제출한 기준 등록서류 심사 후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성명과 예비증거 제출을 고지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성명을 접수한 뒤 권리자에게 전송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 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3) 해제 조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영업자의 성명을 전송한 후, 15일 내에 권리자로부터 이미 신고했거나 또는 제소하였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기준에 취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4) 권리침해에 대한 조치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대응하는 권리 증거자료를 제공하였는데, 플랫폼 내의 영업자로부터는 대응한 권리 증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의 영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링크를 삭제하고 차단하며, 관련 거래와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중복 권리침해에 대한 조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의 동일한 영업자에 대한 중복 권리침해 행위의 신고를 기록하고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손실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6) 공시 의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접수한 통지, 성명 및 처리결과 등을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호조치를 이용한 상표권 침해 단속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중국의 대부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권리자는 이러한 신고처리 체계를 활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단속하고, 신속하게 권리침해를 중지시키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

3.1 「전자상거래법」의 관련 내용

제4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제정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제휴 (합작 :合作)를 강화하여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42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링크 삭제, 차단, 차폐, 해당 거래와 서비스의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 해당 통지에는 권리침해를 증명하는 예비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권리자의 통지를 접수한 뒤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통지를 플랫폼 내의 영업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플랫폼 내의 영업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잘못된 통지로 플랫폼 내의 영업자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악의적으로 잘못된 통지를 전달하여 플랫폼 내의 영업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바로 부담한다.

제43조 플랫폼 내의 영업자는 통지를 전달받은 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권리침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제출할 수 있다. 성명에는 권리침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비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영업자의 성명을 접수한 뒤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관련 주관부서에 신고 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성명을 전송한 후, 15일 내로 권리자로부터 이미 신고했거나 또는 제소하였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기존에 취한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4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접수된 본 법 제42조, 제43조에 규정된 통지, 성명 및 처리결과 등을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

제4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의 영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알거나 또는 반드시 알게 될 경우, 해당 링크를 삭제, 차단, 차폐, 거래와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 내의 영업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2.2 최고인민법원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관련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지도의견」 관련 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관련 민사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고, 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 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활동이 모범적이고, 질서 있게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재판 설정과 결부하여 본 지도의견을 제정한다.

(1) 인민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위조, 모조품 등의 권리침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가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지키며, 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인도하며, 지식재산권 권리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내의 영업자 등, 각 주체간의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내의 영업자에 해당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행위가 자신의 경영 업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상품판매 화면에 표시된 “자신의 경영” 정보, 상품 실물에 표시된 판매주체 정보, 영수증 등의 거래문서에 표시된 판매주체 정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3)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의 영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알거나 반드시 알게 될 경우, 권리의 성질, 권리침해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 및 권리침해를 구성하는 예비증거, 서비스 유형에 근거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는 합리적이고, 신중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링크 삭제, 차단, 차폐 등의 조치가 포함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플랫폼 내의 영업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와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4) 전자상거래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권리유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등에 근거하여 플랫폼 내의 통보 및 성명 체계의 구체적인 집행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조치는 당사자의 법에 의한 권리보호 행위에 불합리한 조건 또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 (5)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전자상거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자에게 보내는 통보 내용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증명 및 권리자의 진실한 신상정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피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권리침해를 구성하는 예비증거, 통보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서면보증 등을 포함한다. 통보내용은 서면 형식을 취해야 한다.

특허권과 관련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기술 특징이나 디자인 특징 대비의 설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권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6) 인민법원은 통지인이 전자상거래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위조, 변조된 권리증명, 허위적인 권리침해 비교의 감정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리상태가 불안정함을 분명히 알면서도 통지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적시에 철회하지 않거나 수정하지 않거나, 또는 오류가 있는 통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내의 영업자가 잘못된 통지, 악의적인 오류 통지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분쟁사건과 함께 심리할 수 있다.

- (7) 플랫폼 내의 영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자에게 제출하는 권리침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플랫폼 내의 영업자의 진실한 신상 정보, 중지 조치가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정보,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권리종속 증명 및 수권 증명 등의 권리침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예비증거, 성명의 진실성에 대한 서면 보증 등을 포함한다. 성명은 서면 형식을 취해야 한다.

특허권과 관련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의 경영자에게 기술 특징이나 디자인 특징 대비의 설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8) 인민법원은 플랫폼 내의 영업자가 발표한 성명에 악의가 있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위조 또는 무효된 권리 증명 및 수권 증명을 제공하거나, 성명에 허위 정보를 포함하거나 또는 명백한 오인을 초래하도록 유도하거나, 권리자의 통지에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재판 결과나 또는 행정처리 결정이 첨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명을 발표하며, 성명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적시에 철회하지 않거나 수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고려할 수 있다.
- (9) 상황이 긴급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즉시 해당 링크상품을 삭제, 차단, 차폐, 거래와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합법적 권리가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플랫폼 내의 영업자는 상황이 긴급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즉시 해당 상품링크를 회복하지 않고, 신고인이 즉시 신고를 철회하지 않거나, 신고를 중지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해 그 합법적 이익이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술한 법률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권리자나 플랫폼 내의 영업자의 청구가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에 의하여 지지해야 한다.

- (10) 인민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판단할 때, 아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예비증거의 권리침해 성립 가능성, 권리침해 행위의 영향범위, 권리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 악의적인 권리침해와 중복 권리침해의 존재여부, 손해확대 방지 유효성, 플랫폼 내의 영업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유형과 기술 조건 등이다.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신고관련 통지 내용 중 특허권이 이미 국가지식산권국에 의해 무효로 선고되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자가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잠시 중단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자가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 (11)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반드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a.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의 제정, 플랫폼 내의 영업자 자격의 심사기준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b. 플랫폼 내의 점포 유형 중에 “플래그 속”, “브랜드 속” 등의 글자를 명시한 영업자의 권리 증명을 심사하지 않은 경우
 - c. 유효한 기술수단을 채택하여 “모조품”, “가짜 상품” 등이 포함된 권리침해 상품의 링크나 신고 접수된 후 다시 계재한 권리침해 상품의 링크를 여과하거나 차단하지 않는 경우
 - d. 기타 합리적인 심사,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3 최고인민법원 「인터넷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지시사항」 관련 내용

- (1)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권리침해를 당했음을 주장하며, 보전신청을 제출하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신속하게 관련 링크를 삭제, 차폐, 연결차단, 해당 상품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하고 재정해야 한다.
- (2)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법에 의한 신고 통지를 받은 후, 적시에 권리자의 신고 통지를 인터넷사용자 및 플랫폼 내의 영업자에게 전송하고, 권리침해를 구성하는 예비증거와 서비스 유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초래된 권리자의

손해 확대 부분에 대해 인터넷사용자, 플랫폼 내의 영업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할 수 있다.

- (3)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권리침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이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법에 따라 전송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권리자로부터 이미 신고 또는 제소하였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이미 취한 해당 링크의 삭제, 차폐, 차단, 해당 상품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해제 하여야 한다. 공증, 인증 절차 등 권리자의 컨트롤이 어려운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지연기간은 상기 합리적인 기한에 포함하지 않으나, 이 기간은 최대한 20일(근무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4) 악의적 성명 제출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자가 필요한 조치를 중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손해가 조성되어 권리자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응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할 수 있다.
- (5)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제출한 신고 통지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지 않지만, 소송에서 그 통지가 선의적인 제출이고, 책임 면제를 청구함과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지하여야 한다.

제7절 세관에서의 상표권 보호

세관의 상표 침해 상품 수출입 관련하여, 세관은 「세관법」에 근거하여 수출입 단계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고, 심지어 권리침해 상품을 몰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와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에서 이러한 보호에 대해 더 상세히 규정하였다.

1. 세관에서의 상표권 보호의 두 가지 방식

세관에서의 상표권 보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1) 상표권을 세관에 등록하여 세관에서 직권에 따라 능동적인 보호를 취하는 방식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중국 세관총서(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세관이 등록된 지식재산권 권리종속 및 상품정보, 권리 침해자 정보, 권리침해 화물 정보에 근거하여, 직권에 의해 능동적으로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통관 절차를 중지시키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권리침해 화물에 대해 차압, 조사 및 권리침해 화물 발송인 및 수신인에 대해 행정 처벌을 실행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2) 상표권의 세관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세관이 수동적인 보호를 진행하는 방식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권리자가 권리침해 화물의 수출입이 곧 이루어질 것을 발견하고, 세관에 직접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수출입 화물을 조사 및 압류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단, 세관은 압류한 권리침해 혐의 화물을 조사하지 않고,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권리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만일 세관이 법률규정 기한 내에 법원의 협조 집행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과시킨다.

세관은 등록된 권리에 대한 능동적 보호를 실행하고, 직권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확실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권리자 입장에서는 상기 "(1) 상표권을 세관에 등록하여 세관에서 직권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

2.1 「세관법」의 관련 내용

제44조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보호를 실시한다.

세관에 지식재산권 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과 발송인 및 그 대리인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지식재산권 관련 상황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합법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로부터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출입한 경우 세관이 법에 의해 권리침해 화물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2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의 관련 내용

제2조 본 조례에서 칭하는 지식재산권 세관보호란 세관이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특허권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통칭함)에 대해 실시하는 보호를 말한다.

제3조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세관은 관련 법률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 규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지식재산권 보호 실시를 청구할 때, 세관에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수출입이 곧 이루어질 것을 발견할 경우, 화물 수출입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청구할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분명히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명칭 또는 성명, 출원 지역 또는 국적 등
- (2)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관련 정보
- (3)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수하인과 발송인의 명칭
- (4)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명칭, 규격 등
- (5)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가능성 있는 수출입항, 시간, 운송수단 등

권리침해 혐의 화물이 세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침해 혐의가 있을 경우 신청서에 세관의 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화물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담보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담보금은 부당한 신청으로 인해 수하인, 발송인에게 초래할 수 있는 손실을 배상하고, 세관이 화물을 압류한 뒤의 저장, 보관,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창고 보관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창고 저장비, 보관 비용은 담보에서 공제되며, 구체적 방법은 세관총서가 제정한다.

제15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청구할 경우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반드시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을 압류하고, 서면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관 압류 증빙을 수하인 또는 발송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압류를 청구할 때,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반드시 신청을 기각하고, 서면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세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침해 혐의가 있는 수출입 화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서면 형식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통지 접수일로부터 3일(근무일) 이내에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반드시 권리침해 혐의 화물을 압류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세관 압류 증빙을 수하인 또는 발송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화물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세관의 동의를 받은 후,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수하인 또는 발송인은 관련 화물을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 수하인 또는 발송인은 화물이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세관에 서면 설명 및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수하인 또는 발송인은 수출입 화물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관에 화물가치와 동등한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에 그 화물의 통과를 청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세관은 담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세관이 수출입 화물에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한 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화물의 압류를 청구할 경우, 세관은 압류일로부터 30일(근무일) 내에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 화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조사, 확정하여야 한다. 침해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세관이 압수한 권리침해 혐의 화물을 조사하고, 지식재산권 주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 지식재산권 주관부서에서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주관부서가 수출입 화물과 관련되는 권리침해 사건을 처리할 때, 세관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 세관은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세관이 압수한 권리침해 혐의 화물 및 관련 상황을 조사할 때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수하인 또는 발송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후, 인민법원에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 화물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재산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권리침해 행위 중지 또는 재산보전에 대한 인민법원의 집행협조 통지를 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 화물을 통과시켜야 한다.

- (1) 세관이 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 혐의 화물을 압류하고, 압류일로부터 20일(근무일) 내에 인민법원의 집행협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2) 세관이 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 혐의 화물을 압류하고, 압류일로부터 50일(근무일) 내에 인민법원의 집행협조 통지를 받지 못했고, 또한 조사를 거쳐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3) 특허권 침해 혐의 화물의 수하인 또는 발송인이 세관에 화물과 동등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에 그 화물의 통과를 청구하였을 경우
- (4) 권리침해 화물이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수하인 또는 발송인에게 있다고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
- (5) 세관이 압류한 권리침해 혐의 화물을 권리침해 화물로 인정하기 전에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압류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25조 세관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 혐의 화물을 압류할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창고, 보관, 처분 등에 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그가 세관에 제공한 담보에서 공제하거나 보증인에게 관련 보증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권리침해 혐의 화물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권리자는 그가 지불한 창고, 보관, 처분 등 관련 비용을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사용된 합리적인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6조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 실시 중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법에 의해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 화물이 세관의 조사를 거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세관에 의해 몰수한다.

세관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몰수한 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의 관련 상황을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몰수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사회공익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은 관련 공익기구에 넘겨 사회공익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매수 의사가 있을 경우, 세관은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몰수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사회공익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매수 의사가 없는 경우, 세관은 권리침해 특징을 제거한 후 법에 따라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위조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의 상표 표식만 제거하고 상업 유통경로의 진입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권리침해 특징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이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제28조 세관이 지식재산권 보호 신고를 받고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한 후,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권리침해 상품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적시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대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스스로 책임을 부담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압류를 청구한 뒤, 세관이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 화물이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거나 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3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 관련 내용

제14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수출입이 곧 이루어질 것을 발견하고, 세관에 압류를 요청할 경우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 수출입 지역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지식재산권을 세관 총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본 방법 제7조 제1항 제 (1), (2) 조항에 규정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청구할 경우, 세관에 권리침해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제출한 증거는 다음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1) 세관에 압류를 요청한 화물의 수출입이 곧 이루어질 것
- (2) 화물에 허가없이 특허권을 실시하였거나 상표권을 침해한 상표 표식, 작품을 사용하였음

제15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압류를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이 정한 기한 내에 세관에 화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세관은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압류일로부터 20일(근무일) 내에 인민법원으로부터 관련 화물의 압류 협조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압류협조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관련 화물의 통과를 요구할 경우 세관은 해당 화물을 통과시켜야 한다.

제21조 세관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수출입 화물이 세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되고, 또한 수출입자 또는 제조자가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 상황을 세관에 신고 등록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수취인 및 발송인에게 기한 내에 화물의 지식재산권 사용 상황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취인 및 발송인이 상기 조항 규정에 따라 화물의 지식재산권 사용 상황,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관이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화물이 세관총서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세관은 화물 통과를 중지시키고 서면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자한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본 방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세관의 서면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이하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1) 관련 화물이 세관총서에 등록된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관에 압류를 청구하는 경우,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압류에 관한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본 방법 제23조 또는 2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관련 화물이 세관총서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압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22조 제1항(1)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압류를 청구할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화물의 가치가 인민폐로 2만 위안 미만인 경우, 화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한다.
- (2) 화물의 가치가 인민폐로 2만~20만 위안일 경우, 화물가치의 5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되, 담보금액이 인민폐로 2만 위안 이하여서는 안 된다.
- (3) 화물의 가치가 인민폐 2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민폐 10만 위안의 담보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본 방법 제22조 제1항(1)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압류 청구 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총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세관총서에 등록된 상표권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총서의 심사비준을 거친 뒤, 세관총서에 은행 또는 비 은행 금융기구로부터 제출한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세관에 상표권의 보호조치를 받기 위한 총 담보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총 담보의 담보 금액은 반드시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전년도에 세관에 신청한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압류 후 발생한 창고, 보관, 처분 등 비용의 합계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전년도에 세관에 압류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압류와 관련한 창고, 보관, 처분 등 비용이 인민폐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총 담보의 담보금액은 20만 위안으로 정한다.

세관총서가 총 담보 사용을 심사 비준한 당일로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 화물이 세관총서에 등록된 상표권의 침해 수출입 화물임을 신고하고, 압류를 청구할 때, 별도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단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 세관총서에서 담보인에게 담보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낸 경우는 제외한다.

II

각 단속 대응 방법 및 장단점 소개

-
- 제1절 민사 소송을 통한 대응_59
 - 제2절 행정 루트를 통한 대응_62
 - 제3절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_64
 - 제4절 경고장 발송을 통한 대응_67
 - 제5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를 통한 대응_69
 - 제6절 세관을 통한 대응_71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가이드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02 각 단속 대응 방법 및 장단점 소개

상기 제1장의 중국 상표 침해 단속에 관련한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에서는 상표 침해를 받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 행정 루트를 통한 대응,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 경고장 발송을 통한 대응,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를 통한 대응 및 세관을 통한 대응 등의 여러가지 절차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다. 각 단속 대응 방법 별로 장단점이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른데,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1절 민사 소송을 통한 대응

권리침해의 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대응 방법에 비해 법원에 상표권 침해 민사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장단점이 있다.

1. 민사 소송을 통한 대응의 장점

1.1 적용범위가 넓다

법원에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사건의 최종적인 해결 방안으로, 당사자가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배상 금액에 대하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협상에서 합의한 후,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두 적용된다.

1.2 법원의 판결 또는 재정이 지지하는 범위가 넓다

관련 법률 및 법규에 근거하여 소송에서 침해라고 인정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판결 또는 재정을 진행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이 범위가 매우 넓다.

- (1) 권리 침해자에 대해 침해 정지, 장애 배제, 위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 (2) 권리 침해자가 손실 배상, 영향 제거 등의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3) 벌금을 명할 수 있고, 또한 권리침해 상품, 위조한 상표 표식, 권리침해 상품 생산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도구, 설비 등의 재물을 몰수할 수도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분쟁 사건 심리시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若干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제21조 규정에 근거하면, 인민법원이 등록 상표의 권리침해 분쟁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민법통칙 제134조, 상표법 제53조의 규정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권리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손해배상 등을 명할 수 있다.

1.3 금전상으로 보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민사 배상도 명할 수 있다. 「상표법」 제63조에 근거하면, 상기 민사 배상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실제 손실: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 (2) 합리적 지출: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지출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호사 비용, 공증 비용 등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시킬 수 있다.
- (3) 침해자 이익: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 침해자가 권리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 (4) 실시허가 사용료 참조: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상표의 실시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 (5) 징벌적 배상: 악의로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엄중한 경우 상기 방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곧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전」에 지식재산권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재판과 입법의 동향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의 구축을 추진하고, 배상 한도를 대폭 높이고 있다.
- (6) 법정 배상금 한도: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 권리 침해자가 권리 침해를 통하여 얻은 이익, 등록 상표의 실시허가 사용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 행위의 상황에 따라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단 법원에서 권리침해가 인정될 경우, 권리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배상 청구를 지지할 수 있다. 실제 손실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 등의 합리적인 지출까지 포함하며, 심지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실제 손실의 최고 5배에 달할 수 있는 징벌적 배상 또는 최고 500만 위안의 법정 배상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 민사 소송을 통한 대응의 단점

2.1 절차, 서류와 증거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규 규정 절차에 따라 관할 확정, 소송 시효, 입건, 수리, 개정, 심판 및 집행까지 엄격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의 규칙에 따르면, 주장한 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은 증립기구로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권리자를 위해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의 원고는 모든 서류와 증거자료를 원칙적으로 자기 측에서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재산보전과 증거보전 등의 신청을 스스로 제기해야 한다.

2.2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경우 스스로 증거수집, 조사, 재산 보전과 증거 보전 신청 등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증거 조사, 재산보전과 증거보전 신청 등의 모든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한다.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먼저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면, 이 비용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3 소요 기간이 비교적 길다

민사소송 기간은 비교적 길고, 일반적으로 양측 모두 중국 국내 당사자일 경우, 소송 1심의 소요기간은 약 6개월이고, 특수한 경우에는 6개월 연장되며, 2심은 3개월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쪽 당사자가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인 경우 상기 1심, 2심 심사기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

제2절 행정 루트를 통한 대응

권리침해의 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대응 방법에 비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장단점이 있다.

1. 행정 루트를 통한 대응의 장점

1.1 상대적으로 절차, 서류와 증거에 대한 요구가 간단하다.

각급 상표행정 관리부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신고, 진행절차, 서류와 증거에 대한 요구는 서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민사소송과 법원의 요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증거에 대한 요구도 신고 대상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구체적 사실과 예비 증거만을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1.2 증거 취득 및 처벌의 편의성이 높다

상표 행정 관리부서가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하게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차압, 압수를 진행하여 그 후의 조사가 더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리고, 정부 기관이 권리침해에 대해 증거 수집과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원고가 직접 진행하는 것에 비해 더 편리하고, 또한 수집된 증거의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사건의 순조로운 진행에 더욱 유리하다. 또한 상표행정 관리부서는 권리 침해자에게 직접 처벌을 가할 권한도 있다.

1.3 비용이 적게 든다.

상표행정 관리부서에 고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 수리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예비증거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증거수집, 조사와 변호사 비용 등의 기타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1.4 소요 기간이 짧다.

일반적으로, 상표행정 관리부서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이 비교적 짧다. 일반적인 사건은 규정에 따라 입건일로부터 2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종결하고, 특별히 복잡한 사건은 약 6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2. 행정 루트를 통한 대응의 단점

2.1 배상금 액수를 직접 결정할 수 없다

상표행정 관리부서가 신고 처리 진행 중 권리침해 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권리침해 행위 중지를 명할 수 있고, 권리침해 상품과 위조상표 표식 제조에 주로 사용된 도구를 몰수, 소각하고 권리 침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권리 침해자에게 권리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는 없다.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상표 침해 배상액에 대해 조정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권리 침해자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2.2 행정 루트를 통한 대응을 진행한 후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상표행정 관리부서가 침해 배상액을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권리 침해자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권리자가 만족스러운 배상을 원한다면, 행정 루트를 통한 대응을 진행한 후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2.3 복잡한 사건에 대한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

상표행정 관리부서는 간단한 모조품 사건에 대한 처리가 매우 빠르지만, 예를 들어 상품의 유사성 또는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 등의 문제에 관련된 경우라든지 또는 외국 당사자에 관련된 경우라든지 등의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처리 효율이 낮아지고, 법원에 비해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해당 사건이 상표권 권리의 종속 분쟁에 관련될 경우 상표행정 관리부서는 해당 분쟁이 해결된 후에 해당 사건을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3. 적용 상황

따라서 행정 루트를 통한 대응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1) 해당 사건이 권리 및 의무가 명확하고, 특히 명확한 모조품 관련 사건이며, 당사자가 빠른 해결을 원하는 경우
- (2) 상표 권리자가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 (3) 상표 권리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가 없거나 높지 않은 경우

제3절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

상표권 침해가 형사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 권리자는 공안기관에 직접 고발, 신고할 수 있다. 아래에 이러한 대응 방식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1.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의 장점

1.1 처벌이 엄하고 효력이 강하다

다른 형식의 권리침해 책임과 비교할 때, 형사책임은 범죄 혐의인, 피고인 인신의 자유 박탈까지 영향을 끼치므로, 상표권 침해 중 책임부담이 가장 엄한 방식이다.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침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상표권 침해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가장 유력하고 엄한 단속방법이다. 권리 침해자 개인 또는 관련 조직의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구류, 유기징역 최고 7년의 형벌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일단 성립되면 범죄 혐의인, 피고인이 즉시 형사 구류 또는 인신의 자유 박탈 위험에 직면하게 되므로, 기타 방식의 권리보호에 비해 제일 강한 효력을 나타낸다.

1.2 권리자의 증거 제출에 대한 요구가 낮다

권리자가 공안기관에 신고 또는 형사 고소할 때, 예비증거만 제출하면 된다. 더 상세하게는 아래 상황을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된다.

- (1) 고발, 고소한 사실이 실제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고
- (2) 해당 사실이 초래하는 결과를 설명하며
- (3) 해당 사실을 고발, 고소 대상이 저지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물증, 인증 및 기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1.3 입건 후 공안국, 검찰원, 법원에서 주도하여 사건을 조사, 처리하기에 권리자의 부담이 적다

형사 고소 후, 공안기관은 신고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존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건, 조사를 개시하며, 증거를 수집한다. 만약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원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며, 형사 공소 절차를 진행한다. 공안, 검찰 기관은 국가공권력 기관으로, 전문 인력, 설비, 정보통신망 및 조사 권한을 가지며, 공안부서는 권리 침해자를 구류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등에서 권리자가 이런 권한을 향유할 수 있다. 또한,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면, 전문성이 강한 공안, 검찰 및 사법기관이 전체적인 사건 진행을 주도하기 때문에 권리자는 추후 단계에서의 입증, 조사 및 소송 등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다.

2.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의 단점

2.1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

형사 고소는 「형법」 제213조~제215조에서 규정한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위조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만약 상표권 침해행위가 형법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에서 관련 사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2.2 민사상 배상금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다

형사 소송 절차는 주로 범죄 및 형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형사 소송 절차는 권리 침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민사 상의 배상금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권리자가 만족스러운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2.3 사건 진행 과정의 불확실성이 높다

형사 고소 이후에는 주로 공안국, 검찰이 사건을 주도한다. 공안국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을 철회할 수도 있고, 검찰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고, 권리자는 이런 절차에 참여하기 어렵다. 물론 공안국, 검찰원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가 별도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2.4 형사 고소의 법률적 리스크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

형사 고소에 있어서, 해당 사실을 과장했거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제출했을 경우 역으로 기소당하거나 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할 리스크도 존재한다. 또한 형법 제243조에 근거하면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무고, 모함하여 의도적으로 타인이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한 자는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관계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형사 고소 여부는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적용 상황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1) 침해 금액이 형법의 기준에 도달하는 등록상표 위조 사건
- (2) 권리자의 목적이 주로 권리 침해자에게 비교적 강한 진압 효과를 원하는 경우
- (3) 권리자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요구가 없거나 또는 손해배상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경우

제4절 경고장 발송을 통한 대응

상표 권리자는 상기 제1절~제3절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권리침해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아래에 경고장 발송을 통한 대응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1. 경고장 발송을 통한 대응의 장점

1.1 서류, 양식, 증거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낮다

변호사를 통한 권리침해 경고장 발송은 기본적인 권리증명과 권리침해 사실의 증명만을 제공하면 된다. 따라서 다른 방식에 비해 서류, 양식, 증거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낮다.

1.2 소요기간이 짧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경고장은 직접 권리 침해자에게 보내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비해 기간이 비교적 짧고, 만약 권리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고 권리침해를 중지한다면, 소요기간이 짧아지고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1.3 이미 고지한 권리증명으로 볼 수 있다

권리자가 권리 침해자에게 권리침해 경고장을 발송한 후, 권리 침해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후의 소송에서 권리 침해자가 침해상황인 것을 인식하고도 고의 및 악의적으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징벌적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1.4 소요비용이 적게 든다

권리침해 경고장 발송은 다른 방식에 비해 소요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 경고장 발송을 통한 대응의 단점

2.1 억제효력이 비교적 약하다

권리침해 경고장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억제효력이 다른 대응 방식에 비해 약하다. 따라서, 권리자는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에 상대방의 답변이 없을 경우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2 배상을 받아내기 어렵다

경고장 자체는 강제집행의 효력이 없고, 침해자에게 직접 문서 발송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배상을 받기 힘들다.

2.3 권리 침해자가 침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권리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후, 권리침해의 단서나 증거를 은폐, 은닉,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에 증거 수집 등을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부적절한 경고장 발송의 법적 리스크

경고장에서 부당하고 과장된 사실이나 이미 실효된 권리의 주장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기소를 당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리스크가 존재한다. 만약 경고장의 배상액 관련 내용이 부당할 경우 상대방에게 사기로 제소 당할 수도 있다.

3. 적용 상황

따라서, 경고장 발송을 통한 대응방식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 (1) 권리침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서면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권리자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요구가 없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 (3) 권리자가 가능한 빨리 권리 침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우

제5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를 통한 대응

최근 들어 상품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상표권 권리 침해도 실제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인 대응 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하여 권리 침해를 해결할 수도 있다. 아래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를 통한 대응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를 통한 대응의 장점

1.1 기간이 짧고 직접적인 효력이 나타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신고처리는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처리되고 결과를 알 수 있다. 권리침해로 판정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즉시 권리침해 상품의 링크를 삭제하고, 거래 및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비교적 기간이 짧고, 직접적인 효력이 나타난다.

1.2 서류, 양식, 증거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낮다

기본적인 권리증명과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증명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서류 및 증거 등에 대한 요구가 다른 대응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를 통한 대응의 단점

2.1 적용범위가 비교적 좁다

이 방식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권리보호에만 적용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술수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플랫폼 운영자는 권리침해 행위가 현저한 경우 즉, 위조상품이 분명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플랫폼 운영자가 유사상표 및 유사상품 등의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플랫폼 운영자가 권리침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관련 서류 전송 및 통지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통하여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여전히 다른 방식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2.2 배상을 받아내기 어렵다

플랫폼 운영자가 권리침해에 대한 배상판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플랫폼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할 경우 일반적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다.

2.3 권리 침해자가 침해 증거를 숨길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하면, 상대방이 권리침해의 단서나 증거를 은폐, 은닉,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권리보호에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하기 전에 증거 수집 등을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적용 상황

따라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신고를 통한 권리보호 방식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 (1) 권리침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어느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한하여 신고를 통해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권리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가 없고, 되도록 빨리 플랫폼의 범위 내에서 권리침해를 제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3) 권리침해 사실이 명백하고, 권리자의 권리에 기타 분쟁이 없는 경우

제6절 세관을 통한 대응

권리침해 화물이 세관을 통해 수출입 되는 경우 상표 권리자는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절차에서 권리침해 화물의 차압, 압류를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을 세관에 등록한 상황에서의 대응

1.1 신청조건

세관이 권리자가 이미 신고,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수출입 화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한 후, 화물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1.2 신청기한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으로부터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근무일) 내에 화물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1.3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통지를 발송하는 세관이다.

1.4 담보제공

세관의 통지를 받은 다음 화물 압류를 신청할 경우 권리자가 능동적으로 화물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해 부담해야 할 담보금액이 적다.

- (1) 화물의 가치가 인민폐 2만 위안 미만인 경우 화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2) 화물의 가치가 인민폐 2만~20만 위안일 경우 화물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되, 담보금액이 인민폐로 2만 위안 이하여서는 안된다.
- (3) 화물의 가치가 인민폐 2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인민폐 10만 위안의 담보를 제공한다.
- (4) 세관총서에 총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1.5 처분 및 압류 조치 및 기한

상기 통지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한 후, 그 다음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세관은 압류일로부터 30일(근무일) 내에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해 조사, 확인하고, 만약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2) 압류일로부터 50일(근무일) 내에 법원의 집행 협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압류한 권리침해 혐의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 통과시켜야 한다.

1.6 처벌 조치 및 법적책임

- (1)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 화물이 세관의 조사를 거쳐 지식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세관이 이를 몰수한다. 권리 침해자는 창고, 보관, 처분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2) 세관 또는 법원에서 권리침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상표 권리자는 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상표 권리자는 창고, 보관, 처분에 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상표권을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응

2.1 신청조건

권리자가 권리침해 화물의 수출입이 곧 이루어질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조사 및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2.2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통지를 발송하는 세관이다.

2.3 담보제공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압류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에 세관에 화물 가치에 해당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2.4 소송제기 및 압류기한

세관이 화물을 차압한 후에 상표 권리자는 신속하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세관에 압류 협조에 대한 통지를 발송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해당 세관이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압류일로부터 20일(근무일) 내에 법원의 화물 압류 협조를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을 경우 협조에 응해야 하고, 만약 받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화물의 차압을 해제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2.5 관련 책임

법원에서 권리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권리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 세관을 통한 보호의 장점

3.1 세관은 신고 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상표 권리자가 세관에 해당 권리 등록하면, 세관에서 능동적으로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만약 권리침해 혐의 제품을 발견하면 즉시 권리자에게 통지해 압류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권리자가 능동적으로 조사하는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

3.2 세관이 능동적으로 통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가 적다

세관이 권리침해 제품을 발견하여 권리자에게 통지한 후, 권리자가 세관에 압류신청을 요청하는 경우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 증거들이 적다. 담보금액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

3.3 세관의 권한이 크다

세관에 후속 권리침해 조사 권한이 있으므로, 권리침해가 인정될 경우 즉시 권리침해 상품을 몰수할 수 있다.

세관에 상표권 권리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 권리자의 압류 신청이 있어야만 압류가 가능하며,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만 권리침해 상품의 수출입을 제지할 수 있다.

4. 세관을 통한 보호의 단점

4.1 적용범위가 비교적 좁고, 수출입 절차에만 적용된다

세관에 등록된 권리에 대해 세관에서 능동적으로 조사하여 권리침해가 인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비교적 현저한 권리침해, 즉 위조상품이 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세관에 권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자가 세관에 압류 신청을 한 후, 다시 소송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4.2 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관이 권리침해를 인정하더라도 배상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기에 권리자가 세관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4.3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

세관에 수출입 화물의 압류를 신청한 후, 세관에서 권리침해로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권리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권리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5. 적용 상황

따라서, 세관보호를 통한 권리보호 방식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 (1) 권리침해 화물이 수출입과 관련되고, 세관의 보호를 통해 제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권리자가 배상금액에 대한 요구가 없고, 다만 화물의 수출입을 제지하는 것을 바랄 경우
- (3) 권리자가 세관의 조사와 압류를 신청한 후에 소송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한 경우
- (4) 권리침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

III

각 단속 대응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
1.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_77
 2. 상표권 침해 행정 처리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_78
 3. 상표권 침해 형사 고소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_79
 4.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고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_81
 5. 세관 신고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_82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가이드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03 각 단속 대응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본 장에서는 각 단속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1.1 제출자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 제출자는 상표 권리자, 이해관계인(피허가인 또는 권리 승계인 등)이다.

1.2 주관 기관

주관 기관은 전국 각 지방 각급 관할 법원이다.

(1) 등급 관할

현재 전국 중급인민법원 및 일부 규모가 큰 대도시의 기층법원에 상표침해 1심 민사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요구한 침해 배상액 액수에 따라 관할 법원이 확정된다.

(2) 지역 관할

상표권 침해소송의 관할 지역에는 피고 소재지, 권리침해 행위 실시 지역, 권리침해 상품 보관 지역, 권리침해 상품 압류 지역 등이 포함된다.

1.3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1) 기소장

민사소송법 제121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소장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 원고의 성명, 성별, 나이, 민족, 직업, 근무지, 주소,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무, 연락처 등
- 피고의 성명, 성별, 근무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등
- 소송청구 이유: 권리침해, 장애배제, 배상요구 등
- 증거: 증거의 출처, 증인의 성명,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함.

(2) 위임장

변호사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인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권리자의 자격 증명

사업자등록증, 회사 등기증명, 여권,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정 대표인 증명 등 기타 증명서류

(5) 증거자료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증 등 권리종속 증명, 피고가 권리를 침해했다는 증거 및 손해 배상액에 관련한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6) 공증 및 인증 자료

특히, 유의할 점은 외국기업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서류에 대하여 공증 및 인증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증문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표권 침해 행정 처리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2.1 제출자

상표권 침해 행정 처리 청구자는 상표 권리자, 이해관계인(피허가인 또는 권리 승계인 등) 및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이다.

2.2 주관 기관

주관 기관은 권리침해 행위 발생지의 공상행정 주관부서(시장 감독관리 부서) 등이다.

2.3 상표권 침해 행정 처리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1) 고소장

고소장에는 아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 a. 신고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 b. 피고의 명칭, 주소, 연락처
- c. 신고 청구와 사실; 이유
- d. 증거의 출처, 증인의 성명,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함.

(2) 위임장

외국인인 경우 지식재산권 대리사무소 또는 법률사무소를 위임하여 행정 처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권리자의 자격 증명

사업자등록증, 회사 등기증명, 여권,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정 대표인 증명 등 기타 증명서류**(5) 증거자료**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증 등 권리종속 증명, 피고가 권리를 침해했다는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6) 공증 및 인증 자료

특히 유의할 점은 외국기업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 및 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경우 중문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상표권 침해 형사 고소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3.1 제출자

상표권 침해 행정 처리 청구자는 상표 권리자, 이해관계인(피허가인 또는 권리 승계인 등) 및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이다.

3.2 주관 기관

주관 기관은 권리침해 행위 발생지의 공안부서이다.

3.3 상표권 침해 행정 처리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1) 서면 신고 서류

서면 신고 서류에는 아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 a. 신고인의 성명, 기본 상황, 주소, 연락처
- b. 고발, 고소 대상의 기본 상황
- c. 실제 사실 발생 시간, 장소, 손실, 경과 등

(2) 자격 증명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등의 제출 필요

(3) 권리자 자발 신고 서류

근무처 소개장 등의 제출 필요

(4) 위임장

변호사에게 위탁 대리할 경우 수권 신고 위임장 제출 필요

(4) 증거서류

적발, 신고 사실이 실제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초래된 결과, 신고대상에 의해 발생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증거, 인증 및 기타 증거자료들의 제출 필요

(5) 공증 및 인증 자료

특히 유의할 점은 외국기업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 및 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경우 중문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고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4.1 제출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고 제출자는 상표 권리자, 이해관계인(피허가인 또는 권리 승계인 등)이다.

4.2 주관 단위

주관 단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이다.

4.3 상표권 침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고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고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는 각 플랫폼의 구체적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아래 알리바바(alibaba)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 (1) 상표권의 상표등록증 등 증명서류,
- (2) 상표권자의 신분증명 서류
- (3)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수권 위임장
- (4) 권리침해 사실 및 침해 관련 링크 주소

상세하게는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의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신고가이드의 규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이트 주소: <https://ipp.alibabagroup.com/instruction/cn.htm>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화면

5. 세관 신고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5.1 상표권의 세관 등록에 필요한 수속

(1) 신청인 자격

신청인은 반드시 유효한 등록상표의 권리자일 것.

(2) 신청 주관 기관

신청 주관 기관은 세관 총서이고, 관련 신청 사이트의 주소와 화면은 아래와 같다.

<http://202.127.48.145:8888/>



세관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

(3) 상표 세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

A. 등록 신청서

등록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 상표 등록인의 명칭, 성명, 등록지, 국적, 주소, 연락인 성명, 전화, 팩스, 메일 등 정보
- 등록 상표의 명칭, 실시 허가된 상품 품목, 명칭, 도형, 유효기간, 양도, 변경, 갱신 등 정보
- 실시 허가인의 명칭, 실시 허가 사용상품, 허가 기한 등 정보
- 상표 등록인이 합법적으로 생산한 지식재산권 화물의 명칭, 산지, 수출입 지역 세관, 수출입상, 주요 특징, 가격 등 정보
- 이미 알고있는 상표권 침해화물 제조상, 수출입상, 수출입 지역 세관, 주요 특징, 가격 등 정보

B. 위임장: 위탁 대리할 경우 권리자가 서명한 수권 위임장 필요(하기 양식 참조)

C. 아래의 서류, 증거 제출 필요:

- 상표 등록인 개인 신분증명 사본, 공상 영업집조 사본 또는 기타 등록 등기서류 사본
-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 상표국에서 발급한 상표등록증 사본.
출원인이 허가 비준된 상표 변경, 갱신, 양도 또는 국제등록 상표출원 등기 등의 상황이 있을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 상표국에서 제시한 관련 상표 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상표 등록인이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한 경우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상표 사용자의 허가 범위 및 허가 기한 등의 상황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상표 등록인이 합법적으로 생산한 지식재산권 화물 및 포장 사진 제공

- e. 이미 알고 있는 권리침해 화물 수출입 증거: 상표 등록인이 타인과의 권리침해 분쟁에서 이미 인민법원 또는 지식재산권 주관부서를 통해 처리된 경우 관련 법률문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f. 세관총서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서류 또는 증거
 - g. 관련 서류와 증거가 외국문자일 경우 중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세관총서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표 등록인에게 관련 서류 또는 증거의 공증, 인증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D. 등기 비용의 지급: 상표 권리자는 등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E. 등기 시간: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한 후, 세관총서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근무일) 내에 등기 비준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권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5.2 권리자에 의한 화물 압류 신청

(1) 신청 주관 기관

신청 주관 기관은 화물 수출입 지역 세관이다.

(2) 신청 서류

A. 신청서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다.

- a. 상표 등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등록지 또는 국적
- b. 상표 명칭, 등록 번호, 유형 및 기타 관련 정보
- c.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수하인과 발송인 명칭
- d.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명칭, 규격 등
- e. 권리침해 혐의 화물의 수출입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 지역, 시간, 운송도구 등
- f. 권리침해 혐의 화물이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세관 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

B. 위임장

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 권리자가 서명한 수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C. 증거 서류

증거 서류는 세관에 압류 신청한 화물의 수출입이 곧 이루어지고, 화물에 허가 없이 상표권 침해 표식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D. 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필요 서류

- 권리자의 신분증명 사본, 공상 영업집조 사본 또는 기타 등록 등기서류 사본
-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 상표국에서 발급한 상표등록증 사본, 상표 변경, 갱신 또는 양도 증명을 제시하고, 국제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상표국에서 발행한 관련 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5.3 세관의 직권에 근거한 조사 및 처리

상기 「D. 상표권을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필요 서류」를 제외하고 상기 5.2와 동일하다.

IV

단속 대응 사례

-
1. Y사 사례_89
 2. P사 사례_90
 3. G사 사례_91
 4. R사 사례_93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가이드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04 단속 대응 사례

1. Y사 사례

(1) 침해 상황

Y사가 중국의 모 전시회에서 모 중국 완구업체 B사가 자사와 똑같은 제품을 전시하고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2) 대응 요구

Y사는 B사에 대한 철저한 침해 대응을 요구하였다.

(3) 실제 대응

본 건은 명확한 침해 대상이 있기에 우선 증거 수집하고 경고장 발송한 후 만약 침해 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으로 대응하였다.

A. 증거 수집:

- 침해 대응 담당자가 공증인과 함께 전시회 가서 사진을 찍고 전시 자료를 받아서 증거 수집하고 공증까지 진행하였다.
- 다음으로 홈페이지, TAOBAO 등 상에서 온라인 증거 수집을 진행하였다.
-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고 공증도 진행하였다.
- 침해 대응 담당자가 공증인과 함께 상대방 회사에 찾아가서 업무상 협력을 논의한다는 명의로 명함을 받고 사진을 찍어 증거 수집하였다.

B. 경고장 발송

Y사가 변호사를 통하여 B사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하지만 B사는 침해 행위를 중지하지 않았다.

C. 민사 소송 제기

상기 이미 수집한 증거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민사 소송 법원은 B사에 지리적 위치가 가까운 전시회가 열렸던 지역의 법원을 선택하였다.

2. P사 사례

(1) 침해 상황

P사의 영문 상표 침해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었고 영문 상표가 부동한 업체에서 부동한 분류에 다수 부당 선등록되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형 상표들도 부당 상표 선등록되어 있었다.

(2) 대응 요구

전체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을 작성하여 모조품 단속하는 진행하는 동시에 중요한 부당 선등록 상표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실제 대응

본 건은 침해 상대가 많고 영문 상표가 중요한 분류에서 선등록 되었기에 침해자에 대해 일일히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였다.

A. 중문 상표 네이밍, 상표 등록 및 활용

우선 상표 등록가능성이 높은 영문 상표에 대응되는 중문 상표를 새로 작명하여 관련 류에서 전부 등록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통되는 자사 정품에는 반드시 중문과 영문을 병기하고 중문이 있는 경우에만 정품이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영문만 표기하거나 기타 중문을 사용하는 모조 상품과 구분하였다.

B. 매체 등을 통하여 정품 홍보

바이두 등에서 상표 명사 해석을 정정하고, 지식재산권보 등에 성명을 발표하며, Taobao 및 JD 등에 공식 매장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정품을 홍보할 것을 건의하였다.

C. 부당 선등록한 영문 상표에 대한 적극 대응

부당 선등록한 영문 상표에 대하여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하는 중요한 영문 상표를 선별하고 3년불사용취소심판,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재출원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심지어 중국에서 사용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영문 상표를 저작권으로 등록하여 한국에서의 창작시점이 상대방 중국 상표 출원일 이전이기에 선권리 침해라고 주장하여 부당 선등록 상표를 무효시켰다.

D. 모조품 판매자에 대한 대응

상표 부당 선등록한 판매자가 알리바바에서 모조품 판매하고 있어 중국 상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부당 상표 선등록과 침해 중지에 관련한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E.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상표 및 저작권의 조합을 통한 보호

캐릭터 이미지에 대하여 비용을 될수록 절감하는 전제하에서 전면적으로 보호 받기 위하여 상표 및 저작권의 조합을 통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상세하게는 우선 주요 캐릭터의 정면 이미지에 대하여 관련 상품분류에서 전부 상표 등록하고, 주요 캐릭터의 일련의 자세 변화는 시리즈 형식으로 저작권 등록하였으며, 기타 주요 캐릭터의 친구들의 이미지는 한개 화면에 넣어 한건의 저작권으로 등록하였으며, 동영상에 대해서는 영상 저작권으로 등록하였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누구든 주요 캐릭터나 그 친구들의 이미지를 어떠한 자세, 각도 또는 조합으로 도용해도 전부 상표권 또는 저작권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3. G사 사례

(1) 침해 상황

G사의 중국에서 대량의 상표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복장, 가방 등을 취급하는 회사인에 중국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으로 대량의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2) 대응 요구

초기 비용을 적게 들이지 않거나 또는 적게 들이는 전제하에서 전체 침해 대상에 대해 침해품 단속을 진행하고 화해금 또는 배상금을 받으면 일부 G사에 반환하여 중국 시장에서 모조품을 없애는 동시에 단속에 드는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하였다.

(3) 실제 대응

G사에서 모든 중국 상표 및 저작권 리스트를 작성하여 대리사무소에 제공하고 대리사무소에서 권리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하며 만약 권리자가 개인이나 여러개 회사로 나뉘여진 상황이면 권리행사하기 쉬운 어느 하나로 권리자 변경을 진행하였다.

G사가 제공한 일부 침해 정보와 상기 상표 및 저작권 리스트에 근거하여 인터넷 Crawler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으로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즉 침해자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고 G사에서 수집한 정보 리스트에서 자기가 수권한 정당한 상표 및 저작권 사용자는 침해 대응 리스트에서 배제하였다.

그 다음 침해 대응 리스트에 열거된 모든 침해자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증거 확보를 진행하고 중국 공증기관을 통하여 공증까지 진행하여 앞으로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온라인 증거 수집).

일부 리스트에 열거된 중점 침해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매까지 진행하고 영수증도 확보하며 이 과정에서도 공증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중국 전국 범위에서 실제 상점에서 판매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인과 함께 현장에 가서 제품 구매하고 공증을 진행한다 (오프라인 증거 수집).

그 다음으로 소송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기소하고 기소 단계, 법원 개정 단계 등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침해증지를 전제로 화해금 납부 협상하여 비용을 받아낸다. 만약 화해하지 않고 끝까지 벼티는 침해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마지막까지 소송을 끝내서 침해배상 내용을 포함한 판결을 받아낸다.

화해금이나 배상 비용을 받으면 해당 비용을 미리 약속한 기준으로 회사에 반환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어떤 침해자들은 더 이상 침해품을 판매하지 않고 앞으로 G사의 제품을 대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자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G사와 상의하여 결정한다(즉 적을 친구로 만드는 셈이다).

4. R사 사례

(1) 침해 상황

고객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중국 세관을 통하여 수출입된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중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후 세관으로부터 침해 혐의품을 발견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2) 대응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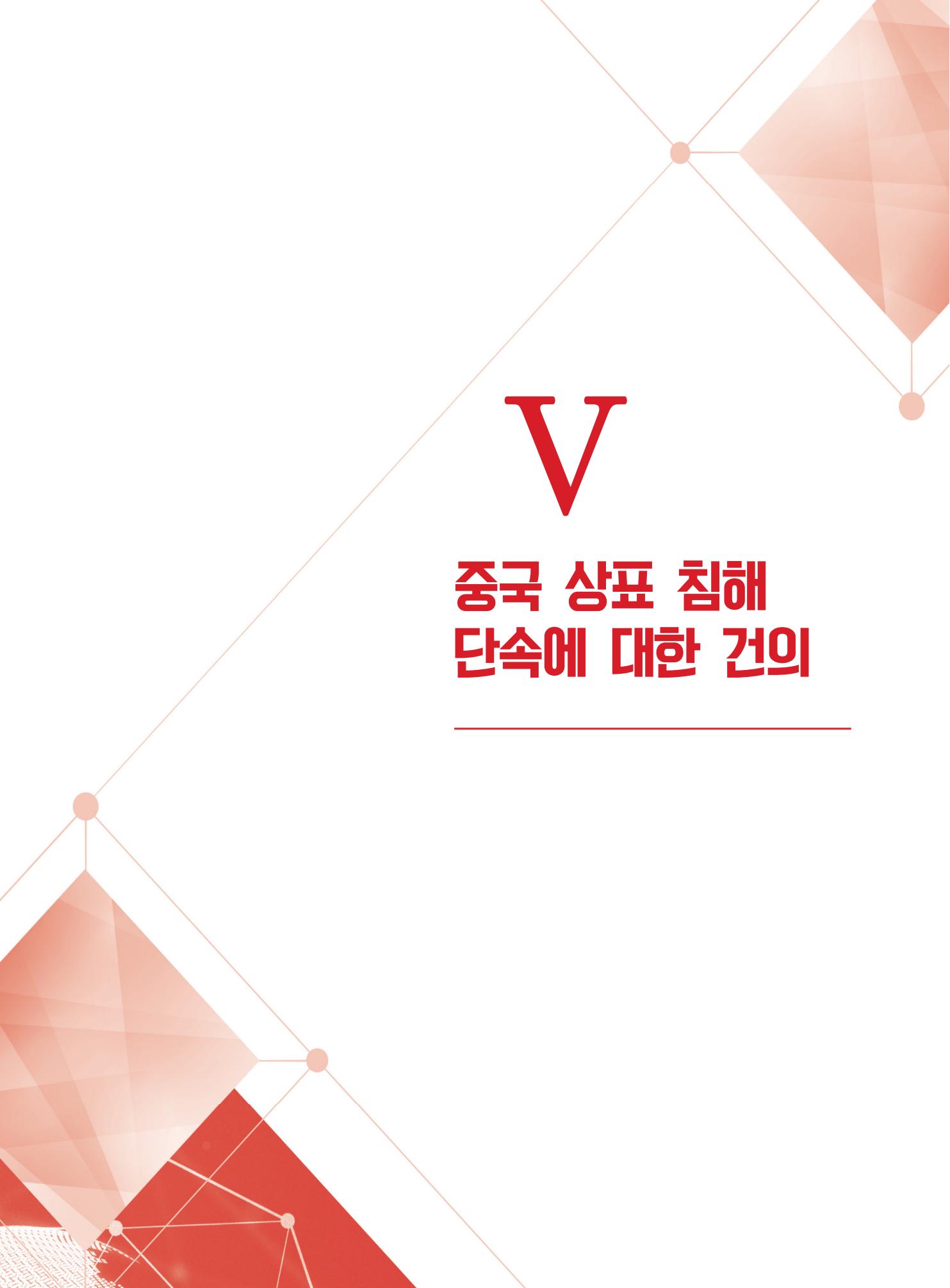
세관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품에 대하여 침해품인지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실제 대응

세관에서 전화로 통지하고 메일로 관련 침해 혐의품의 사진을 보내왔으며 3일내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였다.

저희 사무소에서 고객 기업에게 관련 정보와 서류를 전달하였는데 고객 기업에서 확인한 결과 이 침해 혐의품들은 고객 기업의 허가를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저희 사무소에서 세관에 연락하여 침해 혐의품을 더 이상 압류하지 않고 통과시킬데 대하여 전달했다.



V

**중국 상표 침해
단속에 대한 건의**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가이드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05 중국 상표 침해 단속에 대한 건의

1. 합법적으로 상표 등록을 진행하고, 권리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 (1) 중국에서의 상표 보호는 선출원, 선등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유효한 상표 등록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단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권리 기반이 된다. 등록 상표는 일반적으로 등록된 표장, 상품 분류, 지정 상품 등에 근거하여 보호가 되는데, 실무상 위조 상품이 등록 상표의 상품 분류와 지정 상품과 다른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 어렵다. 또한 제3자나 상표 브로커가 중국에 상표를 악의로 선등록하는 현상이 만연하기 때문에, 상품 개발 초기부터 자사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악의적 선등록 상표를 무효시키는 데 많은 시간,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고, 최종적으로 무효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상표 침해로 제소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될수록 넓은 범위의 지정 상품 및 지정 서비스를 선정하여 미리 상표를 출원 및 등록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상표가 등록된 후에도 상표의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갱신 등록, 불사용 취소심판 가능성 검토, 무효 가능성 검토 등의 유지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합법적으로 수권 사용을 진행하고 권리침해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 (1) 중국 협력업체와 수권 사용 및 협력 계약을 체결할 때, 상표권 보호에 유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상표권 종속, 악의 선등록 방지 등에 대해 명확히 문서로 약속함으로써, 바이어 또는 파트너 등 중국 협력업체가 상표권 침해분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2) 수권 사용 시 중국 협력업체가 모범적으로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는지 감독하고, 부당한 사용 및 권리침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수권 사용한 내용을 적시에 중국지식재산권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 (3) 중국에서 아직 상표를 등록받지 않았지만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상기 수권 전에 반드시 먼저 타인이 등록한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즉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서 선등록했는지를 미리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가능성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명확한 권리침해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와 동시에 신속하게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타인의 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침해 리스크가 존재할 경우 우선 타인의 등록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 이의신청, 무효심판, 라이센스 협상 등을 통해 리스크를 해소한 뒤 사용할 것을 건의한다.

3. 상표 침해 제품의 수출입을 제재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하게 세관에 등록할 것을 건의한다

모조품 제조자들은 중국에서 상표 침해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 내에서도 유통하지만, 기타 국가에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여 모조품이 중국 세관을 통해 수출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4. 중국의 상표보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시장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상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 상표보호 시스템을 적절히 응용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전면적으로 보호 받고 침해 대응을 원활하게 잘 진행하려면, 중국 상표보호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의 변화에 주의해야 하며, 동시에 시장동향을 적극 감시하고 권리침해 상태를 주의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응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1)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중국 상표를 관리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중국 최신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며, 이에 근거하여 중국 상표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 (2)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외부 지적재산권 대리 회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상표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 (3) 기업은 권리침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신중하게 검토한 후 상표 행정 루트, 민사 소송, 형사 소송, 전자상거래 플랫폼, 세관 등의 다양한 분쟁 해결 경로와 조합을 통하여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함으로써, 정당한 자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소재 국가 지원

1. 지재권 상담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 ▶ 현지 IP-DESK 전담인력을 통해 현지 IP제도, 정책 소개, 지재권 출원 절차, 지재권 침해 · 피침해 구제방법 등 지재권 관련 상담

【상담방법】

IP-DESK	현지 IP-DESK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
	현지 전문로펌을 통한 지재권 전문상담

2. 해외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 ·

디자인 출원 지원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 중견기업(중소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 IP-DESK를 통해 현지에서 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국가별 지원 비용】

국가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 네시아	필리핀
상표한도	\$300 (\$650)	\$600	\$500	\$1,000	\$550	\$300	\$300	\$300	\$300
디자인 한도	\$300 (\$650)	\$1,000	\$500	\$600	\$550	\$600	\$200	\$300	\$300
지원비율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지원건	신청기업별 연간 8건(국가제한 없음)								

【지원 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법률사무소(침해 조사 기관)와 계약
신청기업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기업부담금 납부 및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침해감정서 결과보고
KOTRA	비용지원	IP-DESK가 결과보고서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3.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피침해) 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 중견기업(중소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 검토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국가별 지원 비용】

국가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 네시아	필리핀
지원내용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지원건수	신청기업별 연간 3건(국가제한 없음)								
지원한도	\$10,000/건(피침해 실태 조사만 진행시 \$6,000), 공동신청시 기업수만큼 한도증액								
지원비율	최대 70% 지원 (중복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70%→50%→30%)								

※ 협의체 공동신청은 한류편승 관련 사건 우선지원 예정

【지원 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법률사무소(침해 조사 기관)와 계약
신청기업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기업부담금 납부 및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침해감정서 결과보고
KOTRA	비용지원	IP-DESK가 결과보고서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 안내」▶ 「해외진출지원」▶ 「해외투자진출」▶ 「지식재산권보호」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권역	지원 국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유럽 및 중동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란
북미 및 중남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1. 법률자문 지원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 지원

- ▶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중견기업
 - ▶ IP-DESK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서 일부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
- 〈지원 비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출원지원	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지원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연 4건/1社 (국가별 통합, 출원·상담 지원 통합)
분쟁대응	경고장 접수 등 지재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 상담 비용 지원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지원 절차〉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업	해외전문기관 계약	전문기관(법률사무소)과 피침해 실태조사(단속지원) 계약 체결
전문기관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제출
신청기업	실태조사비용 납부	전문기관(법률사무소)에게 실태조사 비용 전액 납부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KOTRA	지원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해외 위조상품 유통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 지원

- ▶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중견기업

- ▶ 해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피침해 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 지원

〈지원 비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침해조사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 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행정단속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 (침해조사 연계만 가능)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연 1건/1社 (침해조사, 행정단속 동시신청시 1건 인정)

〈지원 절차〉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업	해외전문기관 계약	전문기관(법률사무소)과 피침해 실태조사(단속지원) 계약 체결
전문기관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제출
신청기업	실태조사비용 납부	전문기관(법률사무소)에게 실태조사 비용 전액 납부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KOTRA	지원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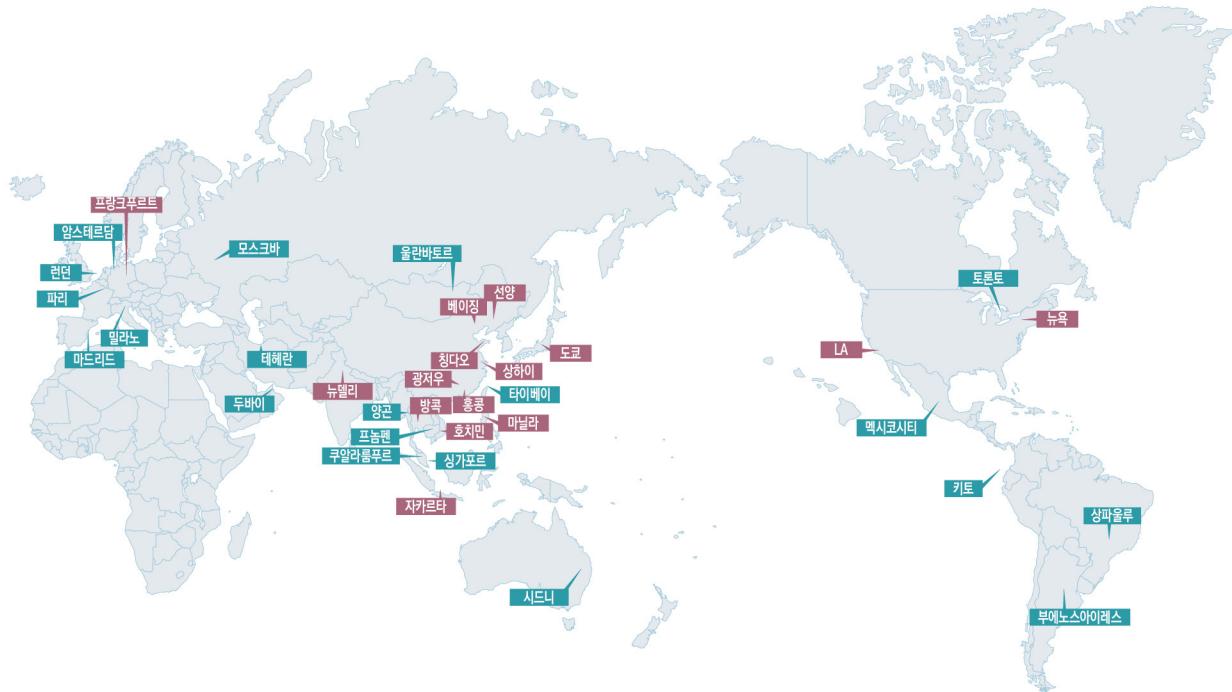
신청 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 안내」▶ 「해외진출지원」▶ 「해외투자진출」▶ 「지식재산권보호」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kotra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소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현황 및 연락처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9개국 15개소

● IP-DESK 미소재 국가 사업수행 : 20개국 20개소

IP-DESK 연락처

국가	전화	이메일
미국	LA	1-323-954-9500(142)
	뉴욕	1-646-918-5594
독일	프랑크푸르트	49-69-2429-9299
일본	도쿄	81-3-6273-4638
태국	방콕	66-2-035-1558
베트남	호치민	84-28-3822-3944(13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2-574-1522(Ext. 140)
필리핀	마닐라	63-2-8894-4084
인도	뉴델리	91-124-4628-500(514)

국가	전화	이메일
중국	베이징	86-10-6410-6162(47)
	상하이	86-21-5108-8771(118)
		MF.Jin@kotra.or.kr
	칭다오	86-532-8388-7931(209)
	광저우	86-20-2208-1600(1405)
	선양	86-24-3137-0770(813)
	홍콩	852-3465-2921

IP-DESK 미소재 국가 연락처

해외지재권실 : 02-3460-3351, ip-desk@kotra.or.kr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가이드

KOTRA자료 20-233

발행인 : 권 평 오

발행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선양무역관(IP-DESK))

발행일 : 2020년 12월

주 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02-3460-3357

홈페이지 : www.kotra.or.kr

저 자 : 郑青松(정청송) 대표 변리사

金哲敏(김철민) 상표 대리인

北京青松知识产权代理事务所

(북경청송특허법률사무소, GreenTree IP)

崔春花(최춘화) 고문변호사

北京德和衡律师事务所(더더형 로펌)

ISBN 979-11-6490-558-4 (93320)
979-11-6490-559-1 (95320)(PDF)

Copyright ©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